

#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2015. 12. 3(최종 12.10).

통 계 개 발 원

# 제 출 문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연구책임자 김 혜 영

연구책임자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

심수진 (통계개발원 주무관)

연구보조원 이재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가족은 유례없는 속도와 폭으로 변동하면서 오늘날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가족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과거 개인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개인의 가족 형태와 가족내 위치가 고려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가치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가족구조와 형태가 갖는 의미는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기능의 시장 구매 가능한 서비스 상품으로의 변화와, 결혼 및 가족구성과 형태의 성별 및 세대, 계층간 이질성 심화 등으로 가족의 제도적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었다. 이것은 곧 가족구조의 해체나 변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성원의 사회화 및 재생산체계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이혼율은 한부모와 재혼가족의 증가했다 또한 혼인을 통한 사회이동의 촉발로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국제결혼 및 재혼의 증가, 이혼율의 상재적 증가 등은 결혼관계 및 가족구성방식을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의 입안 및 실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변화에 대한 진단과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의 유동성 및 탈표준화된 가족주기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근거자료로서 정확한 경험자료가 필요하지만 가족이 가지는 관계적 개념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 ‘가족’은 개인이나 가구를 단위로 관찰·조사된다. 그 결과 가구의 경계를 넘어 확대가족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부양과 돌봄, 자원교환을 측정하거나 가구를 형성했던 가족관계망의 해체와 새로운 형성을 포착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가족의 구성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 가족개념조차 새롭게 도전받

고 있다.

다양한 이유에서 가족과 가구의 범주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통계생산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가족 통계생산의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족변동에 의한 가족역학을 반영한 정책개입과 지원체계의 설계에는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이들의 삶을 전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로서 통계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유형별 가족실태나 동거 및 분거가구 및 1인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 및 부양, 정서친밀성의 교환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부재하다. 특히 가족형성과 해체에 관한 제한적 정보는 결과적으로 결혼, 이혼, 동거 및 동성관계 등 변화하는 결혼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가족 통계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을 확립하여 일관되고 의미 있는 자료 측정 및 통계자료 구축 방안이 중·단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국내외적으로 그봉하는 가족·가구 통계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족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적실하게 포착해냄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족 통계 작성과 생산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하는 가족관련 통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적실성 있는 자료의 생산 및 구축, 해외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및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가족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구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 생산의 현황과 생산방식을 비교·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 분석에 기초하여 가족영역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생산과 관리 및 공표를 위한 일련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의 형태적, 내용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가족의 경계와 범주가 유동적인 것이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의 구성을 통해 가족 통계의 생산과 집적, 관리, 공표 등의 작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식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반영 및 가족 통계 생산의 연속성과 현실성 사이의 균정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제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연구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변화하는 가족의 양태와 현실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가족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사회적 의제와 연관된 다양한 가족의 삶과 형태 측정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가족의 삶을 적절하게 추출해내는 논리구조를 조직화함으로써 가족·가구분야 통계의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하는 개념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통계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적 도구여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계의 하위 영역으로 가족·가구 통계는 궁극적으로 개인 삶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족관련 조사 및 관련 정보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구조의 특징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그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셋째,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이슈들에 대응하는 통계 프레임을 구비해야만 한다. 넷째, 가족은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함께 생성과 성장, 해체 혹은 축소 및 확장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 가족·가구 통계는 가족의 시간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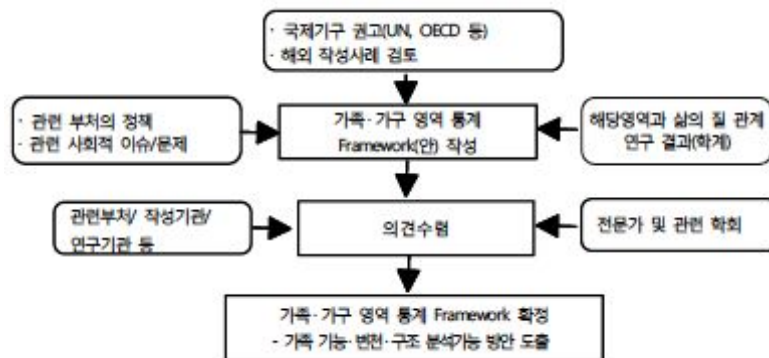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구 통계의 개념틀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가족관련 통계자료생산의 과정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족 통계 자료수집의 기준과 방식(국제기준 여부 및 적용가

능성, 정의 및 개념, 권고 주제 및 핵심질문)은 물론 자료원의 특징과 분류기준들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가족 통계 분류 및 생산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원별 분류현황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 2. 전문가 회의와 학술대회를 활용한 프레임의 확정 및 공유

국내외 가족관련 이론의 검토는 물론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반영하여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점검 및 수정, 그리고 공유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가족 통계 생산현황 및 자료검토를 통한 가족 통계 생산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은 물론 이에 기초하여 구성한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청취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Framework 작성흐름도



## 3. 가족·가구 통계 개선·개발방안 및 가족·가구영역의 웰빙 시사점 도출

확정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에 기초하여 현재의 가족·가구 통계 작성현황을 점검하고 각기 통계생산의 장점과 취약성 등을 비교·평가·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가구영역의 승인통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중복통계,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개발할 통계를 발굴함으로써 가족·가구 통계의 개선사항 및 개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가족 통계 개선·개발내용은 물론 개선·개발추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 추진주체 및 일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가족의 상태와 변화방향에 대한 진단은 가족의 삶과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조건, 그리고 웨빙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논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가족·가구영역과 관련된 주요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현재의 상태와 향후 변화방향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구영역과 연관된 삶의 질 지표와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장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제1절 가족·가구의 개념

#### 1. 가족의 개념과 요소

가족이 가진 제도성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제도성에 핵심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구조, 기능, 발달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구조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된다. 서구 학자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통상적으로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정의와 유사하며, 가족이라는 제도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

다. 즉 어떻게 가족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구성된 가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통해 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및 재생산 방식이 규율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 가족은 장자 중심의 직계가족이 사회적 규범이었으며, 그 결과 가족이란 친족 개념을 벗어나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공동거주, 성적 규제, 출산과 사회화(양육), 경제적 협력과 상호부양,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적 생산단위로서의 가족보다는 소비단위로서의 가족이, 성적 통제기능보다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기능 역시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가족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의 통태적인 삶의 양식이다. 이것은 가족의 생애주기와 연관된 것으로 혼인, 출산, 자녀의 결혼, 배우자 사망, 보인 사망 등과 같은 생애사건에 의해 단계화되기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만혼과 같은 인구학적 현상과 관련 있다.

이처럼 가족의 구조, 기능, 발달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와 후기근대에 들어 그 양상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근대에 들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표준화되었다. 그 결과 표준화된 삶의 양식이 확산되었고 특정한 가족기능이 보편화되었으며, 비슷한 유형의 가족생애주기를 따라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기근대가 시작되면서 개인 및 가족의 삶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이 복잡성을 띠게 된 것이다.

## 2. 가구개념과 가족 통계

가구(household)란 하나의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단위를 의미한다. 가족이 구조, 기능, 발달 및 변화의 세 가지 요소 측면에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데 반해, 가구는 한 시점에서 주거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측정 혹은 관찰단위의 성격이 강하다. 그 결과 가구는 실증적 관찰이 용이하고, 분류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동서양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거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가구는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였다. 뿐만 아니라 가구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임과 동시에 경제적 단위였으며, 가족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단위가 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가족 삶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가구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실상 가족과 가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인에 기초한 부부와 혈연 및 입양에 근거한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가족과 가구가 일치함에 따라 가구라는 관찰단위를 통해 가족의 삶이나 제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와 통계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족과 가구가 일치하는 경우, 사회통계에서 가구는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관찰단위가 된다. 그러나 가족과 가구가 일치하지 않는 전근대사회나 후기근대사회 맥락에서 가구라는 관찰단위는 더 이상 가족의 삶과 가족 제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단위가 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정의의 문제는 가족유형과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정의를 제한하고 누구를 가족구성원으로 국한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특성과 현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가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제한적인 범주와 관계만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구 통계의 목적이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보고, 가족구조, 기능,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되, 가구라는 측정단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가족과 웰빙의 관계

### 1. 가족과 삶의 질

가족 통계를 생산 및 구축하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가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가족을 통해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를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돌봄과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안위와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활동과 역량 발휘에도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이렇듯 가족은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가족과 사회의 질

가족은 미시 수준과 거시 수준을 연계하는 매개체이다. 사회구조가 미성숙하거나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 시민으로서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대신, 가족이라는 중간 조직을 통해 국가나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 즉 가족을 통해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귀속되고, 가장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제도적 가족주의가 발달한 사회로 가족을 떠나서는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 성취보다는 가족의 존속과 성취를 중요시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가족은 신뢰의 규범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회적 응집성은 가족을 통해 발달시킨 특수화된 신뢰를 일반화된 신뢰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이 가진 사회자본을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가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절 가족관련 사회문제

### 1. 가족문제와 정책관심

통상 사회와 가족의 변화 속도에 간극이 존재하며, 그 결과 가족제도와 가족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생애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는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족구보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생애과정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발·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자녀부부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자녀간의 생물학적 관계와 양육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려워졌다. 이혼과 더불어 재혼가족과 혼합가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황혼기 이혼이나 사별한 노인인구의 재혼·동거에 의한 부부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또 다른 현상은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노인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동거형태이나 노년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유대와 공조체계를 개별가구 차원에서 구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즉 동거하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거주하며 상호지원을 교환하는 수정확대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가족에 대한 정확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서는 가구를 넘어사는 가족원끼리의 관계망을 적실히 포착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차적 준거로 동거와 비동거를 구분하고, 돌봄이나 상호자원공유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 방식과 정도, 교류의 종류와 질에 대한 후속적 관찰을 통해 한국 가족구조의 특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가족기능 측면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공백과 정책개입의 확장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 중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으로는 자녀양육, 아동발달 및 사회화, 그리고 노약자의 돌봄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 중 돌봄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사회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족에 대한 희구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결혼과 가족구성 회피를 통해 가족원의 방임이

나 확대 등이 증가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또한 자녀 돌봄관련 지원정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가족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족형성과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역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낮은 출산율과 혼인율은 모두 가족형성과 확대유지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떠나서 해석하기 어렵다.

세 번째 문제는 생애과정의 변화이다. 가족발달상의 전환과 이행은 가족형태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최근 한국 사회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가족생애주기의 절대적 시간은 연장되었으나 개인 생애과정에서 가족생애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말해 가족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단축된 반면 외양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발달적 변화시기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성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남편 사망후 부인이 혼자 생활하는 해체기가 단축되었다. 이러한 생애과정의 변화는 가족 통계 및 가족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가 없는 안정적 시기가 길지만 내부적으로 가족원의 발달적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해체기의 단축으로 노년기 부부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동반자 관계에 주목하여 관계만족도, 안정성, 동거 여부, 해체 가능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가족생활과 통합영역 쟁점

통합영역 쟁점이 가족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쟁점은 가족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생활환경으로서 얼마나 안전한지와 지역사회가 가족에게 얼마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는지와 관련된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가족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공공복지’ 쟁점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 및 효과와 관련된다. 가족의 전통적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아동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한부모와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도록 돕는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권과 차별’ 쟁점은 아동과 여성 등 취약한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것은 비혼, 무자녀가족, 동거, 동성간 관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다.

‘가치와 규범’은 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통합영역 쟁점이다. 가족구조와 기능은 가족규범을 반영하여 작동한다. 결혼에 대한 규범은 결혼의 당위성, 결혼연령,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여, 혼인율, 동거율, 초혼연령, 초산연령 등으로 표출된다. 이혼에 대한 규범은 이혼 가능 사유,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는 수용, 이혼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이혼율로 표출된다. 남녀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는 가족 내부적, 외부적 젠더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 역할분담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노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책임에 대한 규범 역시 실제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돌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은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구조, 생활,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는 쟁점으로 포함한다. 가족제도는 가족의 물질 토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 또는 소득계층의 쟁점을 배제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은 가족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구성과 소비가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가족구조는 자원사용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통합적 쟁점 외에도 가족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거시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보화 측면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가족의 일상생활과 소비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가족생활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화 측면에서 가족은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주를 체험하는 주체가 된다. 북한이탈주민가족,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가족의 증가는 모두 세계화 현상과 관련된다. 또한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족 유입뿐만 아니라 기러기가족을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메가트렌드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가족구조와 관계,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가족생애과정의 절대적 기간을 증가시키고, 부부만 함께 사는 기간을 증가시키며, 가족구조적 측면에서는 노인부부가족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동반하며, 전생애에 걸친 세대관계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족 내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가족과 사회간분담 시스템 역시 중요해진다.

## 제4절 가족 통계적 표준집단 및 취약집단

### 1. 통계적 표준집단

가족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표준집단과 취약집단을 구분한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가족 통계상의 기준점이 되는 집단이며, 통계적 취약집단은 표준집단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가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교문화적, 통시적 통계생산이 용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 통계의 표준집단은 핵가족 중에서도 이성간 부부와 미성년자녀세대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 가족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부부관계는 이성간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함께사는 자녀는 미혼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자녀이다. 무자녀 가족은 표준집단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녀의 수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가족과 가구단위가 일치한다. 이러한 표준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모든 가족구성원의 주거공유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2. 통계적 취약집단

가족 통계를 생산하는데 통계적 취약집단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통계자료가 생산되기 어렵다.

통계적 취약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가정한 표준집단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취약집단은 표준집단의 이성관계 파트너십에서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이 이성관계가 아닌 동성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파트너십이 법률혼이 아닌 동거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이성간 결혼, 이성간 동거, 동성간 결혼, 동성간 동거 등 총 네 가지의 파트너십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이성관계 파트너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은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이성관계의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이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가 미성년자녀가 아니라 미혼자녀 기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두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통계적 취약집단은 조손가족이다. 조손가족은 부모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부모세대가 손자녀세대를 직접 양육하는 가족형태이다. 조손가족은 수적으로 많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내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으로 받아왔으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위해서 가족 통계생산이 필요한 집단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세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취약집단은 분거가족이다. 분거가족은 가족과 가구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생활과 문제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가족, 이주노동자가족, 기러기가족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 분거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거의 범위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구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통계적 취약집단은 재혼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한쪽 부모와 자녀간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혼혈가족이다. 이 가족은 구조상 표준집단과 다르지 않지만 가족관계상으로는 매우 다른 집단이며,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한 측면을 가진다.

이 외에도 표준집단으로부터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는 표준집단의 세 가지 특성 이외에도 혼인력, 출산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혼인력에서는 동거와 결혼시기 및 파트너십 해체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출산력에서는 임신·출산시기와 장소, 부성(paternal), 모성(maternal)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이 결합되면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혼혈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 제5절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 1. 해외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해 OECD Family Database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고,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센서스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검토한다.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관련 자료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2006년 처음으로 공개하였으며, 현재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아동정책, 아동성과라는 4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구조 지표의 경우 가족과 아동, 출산, 결혼 및 파트너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경우 가족 및 아동과 고용상태에 관련된 내용,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아동정책 지표는 유자녀가족 지원정책 개요, 자녀양육관련 휴가, 영유아·아동 보육·교육, 가족유형·소득수준별 보육이용유형화 등이 포함한다. 아동성과 지표는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과 문해율, 사회참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OECD 자료구조를 확인해보면, 가족구조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구조와 가족의 노동시



장 지위에 포괄되는 지표 중 일부 지표들은 ‘가족가치’ 차원과 연결된 지표이다. 그러나 가족가치와 관련된 지표가 국가마다 표준화되어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가족가치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요컨대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항목 중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직결된 차원은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가족가치 영역이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가족·가구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가구의 구성과 구조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해외의 인구센서스 자료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가족 및 가구정보의 범위를 살펴본다.

미국 인구센서스는 총 문항은 10개로 매우 간략하다. 가족과 관련하여 인구센서스에서 묻고 있는 것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구원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외 교육, 언어, 주거변화, 건강보험과 장애, 군복무, 경제활동, 수입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혼인상태 및 출생아수에 관한 것은 American Community Survey(인구센서스의 long-form 형태)에서 묻고 있다.

독일 인구센서스는 무엇보다 혼인의 다양한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출생과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를 부모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출산 여부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자녀수를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그 외 부모의 경제활동 현황, 아동보육기관, 어린이집(day-care) 이용 여부, 육아급여 및 출산육아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 여부 등 정책과 관련된 항목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 인구센서스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구 거주자,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 신생아, 세입자, 룸메이트,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녀,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배우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성인 자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혼인상태(동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법적인 결혼상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인구센서스는 ‘가구주’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주란 자신의 이름으로 공공기론관리소(Public Records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한 이탈리아 인구센서스는 가족관계의 경우 가구주를 중심으로 묻고 있으며, 결혼상태의 경우 현재의 결혼상태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결혼경험 전의 결혼상태에 대해서도 묻고 있어 이를 통해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결혼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국 인구센서스는 해당 가구에 주로 사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영국 역시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가구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가구주는 주거지를 소유하거나 빌린 사람, 그리고 집세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가구주와 가구원 각각의 모든 관계를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 역시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결혼경험이나 출생아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묻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많은 문항을 할애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캐나다의 인구센서스는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person 1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도 법적인 결혼 또는 동거, 별거, 이혼, 사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예/아니오 중 하나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호주 인구센서의 경우 역시 캐나다 인구센서스와 유사하게 가족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들 부부(동거커플)의 자식인지, 혹은 다른 한쪽의 자식인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혼가족과 관련된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인구센서스는 가구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주로 그 가구에 사는 성인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함께 사는 가구구성원 모두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어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혼인상태 역시 세분화하여 묻고 있으며, 출산경험 역시 15세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

로 묻고 있다. 다른 국가의 인구센서스와 차이점은 출산경험과 관련하여 응답거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과 일본의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혼인상태, 자녀수, 등을 묻고 있어서 한국 조사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 2.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자료와 한국의 가족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현실태와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족에 대한 현상에 대해 비교문화적인 준거틀로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효용도가 높은 가족 통계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간명하게 구성한다. 넷째, 통계의 효용도는 정책적 활동도와 연관되어야 한다.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 유형화된 가족관계망이나 관계틀(가족형태와 관계구조)

가족기능: 가족구성원이나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 내용과 결과

가족가치 및 의식: 가족과 가족원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주요한 가치 기준 및 행위규범

가족의 발달과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및 가족변화(시간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형과 해체로부터 외부적 사건이나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기술 및 자원, 노동형태, 불평등구조, 정치체계, 복지체계, 가치체계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 영역을 핵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영역 중심 축은 첫 번

째 파트너십 유형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부부관계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법률혼인지 사실혼(동거 포함)인지, 초혼/재혼 여부, 한부모 성별 및 사유, 배우자의 출신국 의 총 세가지 준거를 통해 구분될 수 있다. 두 번째 중영역은 세대구성이다. 세대구성의 1차 준거로는 가구의 규모, 2차 준거는 성별 및 법률혼/사실혼 여부, 3차 준거는 출신국가, 친생관계, 주거분리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구조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영역을 경제적 부양, 임신 및 출산, 돌봄,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부양의 1차 준거는 가족 내 부양자 수(홀벌이/맞벌이), 소득수준, 원가족 부양 여부이며, 2차 준거는 가족 내 부양자와 관련하여서는 부부소득비율, 원가족 부양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부/모 소득부양액이다. 임신 및 출산은 가족 재생산 기능과 관련한 것으로 1차적 준거의 경우 출산력과 추가출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2차 준거는 자녀의 성별과 태울 수 있다. 돌봄과 관련한 중영역은 1차 준거는 자녀의 연령을 들 수 있으며, 2차 준거는 주 돌봄자 및 돌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소통, 관계 만족도, 폭력을 1차 준거로 하여 2차 준거로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통계는 개인단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중영역은 파트너십, 임신·출산, 돌봄에 대한 책임, 성역할 태도 및 가족주의 이념으로 구성된다. 파트너십과 관련하여서는 결혼, 동거, 재혼, 이혼에 대한 허용성, 재생산의 경우에는 자녀 필요성, 희망 자녀수 및 성선호를 들 수 있으며, 돌봄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연령별 돌봄의 책임에 관한 견해, 성역할 및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가사분담, 맞벌이, 여성성/남성성, 직계가족의 이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은 개인단위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1차 준거 이외에는 설정하지 않았다.

가족의 발달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애주기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형성과 해체에 관한 내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연령, 재혼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들과 출산율, 부모의 자녀출산시 연령, 자녀수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해체와 관련하여서는 이혼, 자녀 독

립, 사망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변화에 관한 내용은 3차원적인 조사상황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변화가 야기되는 계기들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가족의 발달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2장 가족·가구 통계 작성현황 분석

### 제1절 영역통계 작성현황

#### 1. 사회통계 현황과 가족 통계

2015년 5월 기준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총 934종이며, 이 가운데 605종만이 국가승인 사회통계로 설정·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가족관련 통계는 조사통계 8종, 보고통계 3종으로 총 11종이며, 모두 전국단위에서 작성되고 있다.

〈표 1〉 영역별 사회통계 현황

주영역 (부영역)	통계명	작성 연도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지역 수준	모집단 분류	모집단 기준
가족 (건강)	전국출산력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82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사	3년	전국	가구	만15-59세 기혼여성
가족	보육실태조사	2004	보건복지부	조사	3년	전국	시설, 가구	
가족	가족실태조사	2005	여성가족부	조사	5년	전국	가구	만12세 이상
가족 (노동)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2006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기관, 기업 체	X
가족 (노동)	여성가족 패널조사	2007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조사	2년	전국	여성( 가구)	만19세 이상-65 세 미만

주영역 (부영역)	통계명	작성 연도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지역 수준	모집단 분류	모집단 기준
가족 (안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개인	19세 이상
가족	한부모가족실태 조사	2012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가구	
가족 (인구)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2014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가구 (다문 화)	X
가족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1994	보건복지부	보고	반기	전국	아동	
가족	가정위탁국내 입양소년소녀 가정현황	1994	보건복지부	보고	반기	전국		
가족 (안전)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2006	보건복지부	보고	1년	전국	아동	

## 2. 가족조사 통계

본 절에서는 개인이나 가구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조사통계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통계청에서 승인하고 있는 가족관련 조사통계들은 각기 고유한 목적,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자료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들 가족관련 조사들은 개인 및 가구에 기반하여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맞춰 배치하고, 각 조사들의 특징을 살펴 재배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따른 영역별 주요 조사통계

영역	주요조사
가족구조	• 인구주택총조사

영역		주요조사	
가족기능	경제적 부양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신·출산 및 돌봄	• 생활시간조사 • 보육실태조사	• 가족실태조사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정서적 지지	•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족가치	• 사회조사		
가족변화	• 여성가족패널조사		
취약집단 또는 특수집단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 가족의 형태와 가족관계망의 틀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주요한 국가통계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영역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하는 조사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조사의 기본 표본틀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는 조사이기도 하다. 조사 단위는 가구단위로 조사하되,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준해 가구유형과 구조를 조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것은 가구·가족조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영역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기능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 부양 측면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를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주요 조사내용은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일지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정책의 확대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크게 가구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전

국 가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사로, 만12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의 범주는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미혼 자녀에 한하여 포함한다. 가족실태조사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비동거가족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족부양 변화양상 파악 및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생산을 목표로, 15~5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이며, 사회조사 중 ‘가족’부분은 가족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사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 가족관련 가치의 변화, 가족형성과정과 사건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한 패널조사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 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족관 관련된 부분은 가구용과 개인용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가족 관련 조사항목

구분	가족구성 및 쟁점문항
가구	가구원 동거여부, 가족구성의 변화(새롭게 동거하게 된 가구원, 동거사유 등), 일시적 비동거 및 사유,
개인용	결혼과 부부생활(혼인변화, 결혼 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의사결정, 함께하는 활동, 갈등), 가사노동, 별거(자녀돌봄, 양육비 등), 이혼(자녀 양육권, 미성년자녀 동거, 양육비 등),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자녀(미취학, 초중고, 성인)와의 관계, 본인 및 남편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본인 및 남편 부모와의 관계, 여성건강
일자리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



이처럼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동거 가구원과 비동거 가구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족형태를 모두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 역시 가족형태를 동거가구원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가족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필요성 확대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녀 돌봄,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사회적 지지망, 정책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조사단위는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 귀화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9~24세)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국적, 성별, 한국 입국관련 등 일반사항, 배우자의 취업 및 직업, 모국에서의 직업, 현재 취업여부 및 직업 유무,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이다.

### 3.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 통계현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가구 통계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 프레임워크’가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비교 지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OECD Family Database이다. 그러나 OECD 가족 통계지표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어, OECD 국가들과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를 구축을 시도한 신윤정 외(2012)에 따르면, 총 163개의 지표 중 96개의 자료에서 한국자료가 아예 누락되어 있으며, 그 중 71개는 현재의 자료를 재구성 또는 집계할 필요가 있고, 26개는 새로운 조사항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가구 자료현황

대영역 (표와 도표수)	누락자료				제공자료			
	한국자료 보완		자료 보완 불가 능	계	한국자료 업데이트		자료 업데 이트 불가 능	계
	OECD 기준 부합	OECD 기준 부합 되지 않음			OECD 기준 부합	OECD 기준 부합 않음		
가족의 구조(53)	8	15	11	34	14	-	5	19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지위(59)	5	25	13	43	2	-	14	16
가족 및 아동 정책(51)	4	14	2	20	7	3	21	31
아동성과(71)	3	7	27	37	16	2	16	34
합계(163)	17	54	26		23	3	40	
	71		26		26		40	
제공 가능한 한국자료	137 (OECD 기준에 부합 80개,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 57개)							
제공 불가능한 한국자료	26							

## 제2절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 1.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가족 통계조사

가족 통계는 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통계들을 자료화하고 일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가족관련 필요통계와 지표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은 이러한 필요통계와 지표의 생산과 집적, 분류의 과정에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된다.

가족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기본모듈로 하여 가족의 구

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조사되고 분류, 공표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으며, 추가조사 및 집계항목도 적지 않다. 특히 결혼의 형성과 해체의 부분에 대한 것은 혼인력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통계에 대한 학계 및 정책현장에서의 요구도는 적지 않으나 국민적 정서와 조사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관계의 변화는 성인남녀의 가족생활 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이혼, 재혼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의 성격과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아동과 아동의 돌봄 및 부양과 연관된 항목에 대한 관심이다. 초저출산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아동의 발달과 복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출생통계로부터 이들이 어떠한 가족상황에 놓여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가족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자료생산이 누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OECD 가족 통계

OECD 가입국가로서 우리의 가족관련 정보는 OECD의 Family Database에서 집계, 분류되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국가 중심의 가족분류가 우리의 정서와 가족개념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가족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쟁점, 사회정책의 개입지점과 개입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는 별개로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보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통계의 집계 및 분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4장 가족·가구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 주요 조사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가.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집단으로서 불완전성: 조사시기의 문제 및 가구원간 관계정보 부재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집계되어 제공되었기 때문에, 집계 기간과 동떨어진 조사들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기에 모집단이 지나치게 노후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매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조사시점의 불일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가구주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가구원들간의 정보를 추적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집계하는 ‘한부모가구’의 분류는 정책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 상이하어,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총조사가 전환되면서 기존의 인구총조사 이상의 가구원간의 관계가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책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들에서처럼 집계항목 목표에서도 기존의 ‘세대’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가구주’ 개념과 ‘가구원’ 범위의 혼선

가구단위 조사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가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토대로 가구의 구성 및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사마다 가구주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구주’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사대

상 가구원을 설정할 때 많은 경우 ‘동거하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데, 동거여부는 가구의 규모 및 형태, 가구원용 설문지 응답자 선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구단위로 가족생활을 파악하고 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가구조사는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시적 비동거, 주말 부부 등의 구분 문제와 1인가구의 통계가 명확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 1인가구와 직업 혹은 학업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경우의 구분, 동일한 이유로 한부모 가구가 된 경우 이를 가족형태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 표준화된 가족가구 통계 배경변수의 부재

가족·가구영역의 조사들의 경우, 조사마다 표준화된 배경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가족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적 부양’ 영역과 관련한 조사자료의 가구정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OECD Family Database에서 4개 영역 중 하나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정보 전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가족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문항조차 가족관련 조사마다 조금씩 다름으로써 자료생산 및 결과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 라. 가족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의 부재

가족의 변천과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원의 출생과 사망, 결혼 또는 동거, 자녀의 독립, 부부의 이별과 같은 가족사건이다. 이처럼 가족의 상태와 형식의 변화가 개인생애의 변화에 의한 것이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러한 변동은

통상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의 회수와 유형에 의해 집계된다. 따라서 가족의 기본형태와 크기, 구성원리가 유형화된 가족구조의 측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의 회수와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가족 통계에서 가족 형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혼연령과 제도적인 형태여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 다양한 결혼의 방식과 재혼과 같은 결혼횟수에 대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녀출산 여부는 확인하지만, 자녀출산시 모의 연령을 비롯한 출산에 관한 자료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산된다. 또한 가족해체에 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부의 이별과 이혼, 자녀들의 독립, 사망에 관한 자료들은 충분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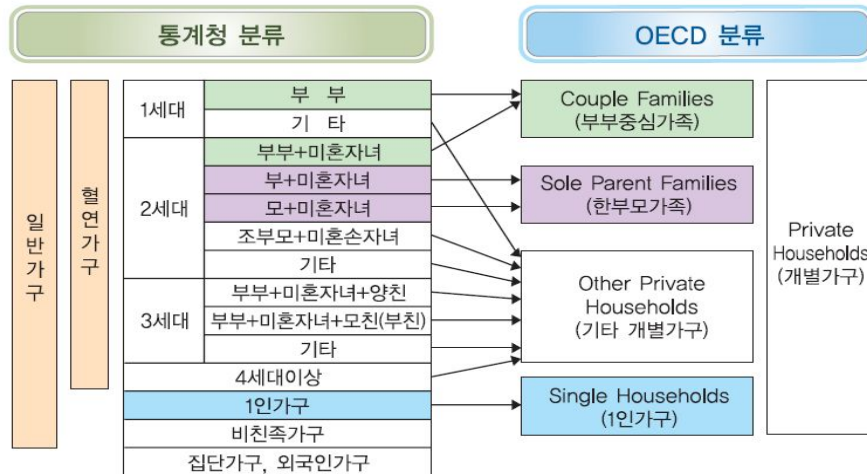
#### 마. 가족형태의 복잡성과 데이터 클리닝과 자료화의 문제

사회조사 항목들 가운데서도 데이터 클리닝이 가장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의 유형 및 형태구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동거단위라는 가구의 범주로 한정하여 가족관계를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가족관계의 복잡성은 결코 제한된 측정정보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족의 형태와 유형화가 간단치는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응답이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가구유형이나 가족관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해석에 앞서 다양한 사례나 경험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누적되어야 한다.

## 2. 한국 OECD Family Database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OECD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통계청과 OECD의 가족형태 분류체계 비교



출처: 김은지·최인희·김혜영(2012):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의 고유한 가족문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위를 따지기 보다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자료의 산출과 함께 우리사회의 고유한 가족문화와 현실을 포착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 분류체계 외에도, 미성년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부재는 국제통계와 한국의 통계를 비교하기에 어려운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등 모성고용(maternal employment) 관련 정보의 부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녀 돌봄의 문제나 일가정양립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 1. 단기과제의 실행계획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이로 인한 가족정책 영역의 확장은 정책추진의 배경으로서 혹은 주요한 정책의 표적집단으로서 특정 유형의 가족과 그러한 가족의 어린자녀 및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장애, 노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체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조사를 설계하고 있어 조사의 주기는 물론 규모와 문항의 중첩과 내용적 차이가 동시에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지 않은 조사와 조사결과에 준한 가족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는 가족 통계 생산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가족 통계 생산 기관과의 업무협업체 구성

우선적으로 가족영역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 및 조사결과의 집계 및 분류와 가공에 관한 한 공공적인 책임과 노하우가 집적된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각 조사의 특징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징화하여 각개의 가족조사 및 가족 통계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한된 규모와 문항수로 기획되는 가족조사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질문만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신뢰할만하고 안정적인 자료생산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조사로서 인구센서스나 사회조사는 결과분석에서 제기된 미분류 형태나 기성의 가족유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족관계나 부양 및 돌봄관계망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삶의 변화 양상에 대한 민감성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 나. 표준화된 가족 통계 생산 매뉴얼의 구성 및 공유

가족영역의 통계생산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통계생산의 기본



매뉴얼의 사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거나 표준화할 필요는 없지만 가구원간의 관계를 통해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유된 질문문항과 조사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가족 통계생산에 있어 조사의 주체와 실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준화되지 못한 측정(unstandardized measurement)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가족조사 및 통계 전문인력 교류와 의사결정과정의 컨트롤 타워

가족관련 통계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정부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주축이 되어 생산, 분석하고 있어 비교적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관리 및 승인의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과 가족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간의 긴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실태조사가 정례화되어 비교적 빈번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에는 통계청의 통계전문가나 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의 형식으로 관련 통계 생산과정의 조직화에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경우 기본문항의 설계와 변경으로부터 특정시기마다의 부가적 문항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가족관련 조사들의 체계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조사문항의 승인과 공표과정에서 관리된 누적적 기록들을 모아 사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처로 송부하고 차년도 조사과정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가족·가구 통계 개선계획 수립

전국단위의 가족관련 조사통계와 행정보고 자료가 구축되고는 있으나, 각 조사결과에 의한 가족관련 자료구축 및 OECD 가족자료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조사 및 통계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집계나 분류의 문제로부터 신규문항 검토에 이르기까지 가족 통계의 개선사항을 정리하

여, 중단기과제로 구분하는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2. 중장기과제의 실행계획(우선순위 포함)

### 가.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의 적용과 이의 개선과제 로드맵 작성

그동안 가족 통계에서 주요하게 요구된 사항들 가운데 혼인 및 자녀 출산에 관한 문항들은 2015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가구단위의 조사에서 개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전국 집계에는 필요하나 쉽게 조사문항을 설계할 수 없었던 문항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혼인력과 아동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2015년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과정 및 그 결과 분석과정을 사후적으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준해 비교분석하고 인구센서스를 통한 가족구조 및 가구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 인구센서스를 기준통계로 하여 여타의 가족관련 조사들의 위치조정 및 정확한 가구 및 가족정보 제공의 수립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가족·가구 통계 조사의 총화와 특성화의 기획·조정

가족관련 조사통계가 현재 전국단위에서 11종 생산되고 있으나, 가족 현실을 포착하기 위한 위, 아래로부터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해 각기 조사의 목적에 따른 내용의 조정과 조정후 세부 내용의 전문화 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각 조사통계마다 조사통계가 포괄하고 있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포괄하는 부분에 관한 문항들은 보다 간편하게 혹은 중분류이상의 범주로 측정하고 본조사의 특성화 문항에는 세분류 수준에서 측정하는 등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문항수의 조정과 중복을 피하면서도 상호조사결과의 공유와 연계를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가족·가구 통계의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피드백

가족·가구 통계에 대한 체계화의 밑그림으로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그 활용여부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의 영역으로 규정된 11종 통계 외에도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전국단위의 국가승인통계들을 대상으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준해 자료생산의 방식과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들 통계들이 각각의 주기와 고유한 목적이외에도 사회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가구 및 가족구성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생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및 결과가 통계승인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충분한 실효성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 1. 현 국가 주요지표의 가족·가구 통계 체계

통계청에서는 2014년부터 기존의 ‘e-나라지표’ 체계를 개선한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제공된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가족·가구 통계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인구통계 영역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가 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가족·가구 통계 및 인구영역

영역	하위영역	지표통계명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 평균가구원수		• 평균가구원수	
		• 한부모가구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조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조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이용률	
		•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 인구	• 총인구 • 도시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조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인구비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구구성’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들과 ‘가족형성’의 주요 지표들은 본 연구의 ‘가족구조’ 영역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단 ‘가족형성’ 지표 중 일부는 가치관의 영역으로서 ‘가족가치관 및 의식’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인구변화’ 영역의 통계들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 가족 돌봄기능, 출산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기능’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역분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국가 주요지표의 가족·가구 통계 지표들은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서 포괄하는 영역과 내용이 현재의 국가주요 지표에 모두 포괄되어 있지는 않다.

## 2. 신규지표 제안

### 가. 영역별 신규지표 제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주요지표를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가구 프레임에 부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가족의 불안정성의 심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족구조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설계변경 및 등록센서스자료를 활용하여 연령구간별 혼인율과 이혼율, 재혼율을 집계분석함으로써 가족변동의 추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십으로서 동거비율을 적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위기 관리차원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가족·가구 통계 역시 아동을 기준으로 정보를 재구성, 재집계하여 공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족정책의 주요 추진영역은 바로 유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돌봄의 영역과 관련하여 맞벌이가구에 대한 통계 역시 국가의 주요지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유자녀가구의 부모맞벌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취학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 상황에 대한 점검이 쉽게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 나. 주요지표(정의, 측정방법, 지표의 의의, 해설,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 지표

앞에서 상술한 신규지표가 과연 국가의 주요지표로 설정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내용

은 향후 두차례 예정되어 있는 자문회의의 의견청취를 통해 확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연구진이 집필하고자 한다. 12월 5일 한국 가족 학회에서 마련된 제 5차 자문회의를 통해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과 그에 따른 추가 자료생산 및 집계와 내용의 내용들과 주요지표의 부분을 점검받은 후에 12월 8,9일에 걸친 추가 자문회의에서 연구진이 구성한 산식 및 보조 지표, 국제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1.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 6

    2. 전문가 회의와 학술대회: 프레임의 확정 및 공유 ..... 9

    3. 가족·가구 통계 개선·개발방안 및 가족·가구영역의 웰빙 시사점  
        도출 ..... 11

**제2장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12**

제 1절 가족·가구의 개념 ..... 12

    1. 가족의 개념과 요소 ..... 12

    2. 가구개념과 가족 통계 ..... 16

제2절 가족과 웰빙의 관계 ..... 19

    1. 가족과 삶의 질 ..... 19

    2. 가족과 사회의 질 ..... 22

제3절 가족관련 사회문제 ..... 26

    1. 가족문제와 정책관심 ..... 26

    2. 가족생활과 통합영역 쟁점 ..... 36

제4절 가족 통계적 표준집단 및 취약집단 ..... 42

    1. 통계적 표준집단 ..... 42

    2. 통계적 취약집단 ..... 44

제5절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 46

    1. 해외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 47

    2.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 62

**제3장 가족·가구 통계 작성현황 분석 ..... 74**



ii 가족가구 통계 영역 프레임워크 작성

제1절 영역통계 작성현황 .....	74
1. 사회통계 현황과 가족 통계 .....	74
2. 가족조사 통계 .....	78
3.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 통계현황 .....	88
제2절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	89
1.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가족 통계조사 .....	89
2. OECD 가족 통계 .....	95
<b>제4장 가족·가구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b>	<b>103</b>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03
1. 주요 조사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103
2. 한국 OECD Family Database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114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	118
1. 단기과제의 실행계획 .....	118
2. 중장기과제의 실행계획(우선순위 포함) .....	121
제3절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	122
1. 현 국가주요지표의 가족·가구 통계 체계 .....	122
2. 신규지표 제안 .....	125
<b>참고문헌 .....</b>	<b>128</b>

## 표 목차

<표 II-1> 삶의 질 구성요소 .....	20
<표 II-2>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가중치 .....	21
<표 II-3> 사회의 질의 요인과 영역 .....	23
<표 II-4> 부부폭력 발생률 .....	33
<표 II-5>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	37
<표 II-6>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	38
<표 II-7> 국내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	39
<표 II-8>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40
<표 II-9> 2014년 소득계층별 가족유형 .....	41
<표 II-10> OECD Family Database 지표 .....	48
<표 II-11> 가족구조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67
<표 II-12> 가족기능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69
<표 II-13> 가족가치관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	70
<표 III-1> 영역별 사회통계 현황 .....	75
<표 III-2> 영역별 사회통계 현황 .....	77
<표 III-3>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따른 영역별 주요조사통계 .....	78
<표 III-4> 가족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83
<표 III-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가족 관련 조사 항목 .....	86
<표 III-6>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가구 자료현황 .....	88
<표 III-7>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과 작성통계 현황 .....	90
<표 III-8>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의 자료제공 현황 및 개선 사항 제언 .....	96
<표 IV-1> 가족 통계에서 파트너십 조사문항의 불일치한 사례 .....	108
<표 IV-3>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방안 .....	115
<표 IV-3>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가족·가구 통계 및 인구영역 .....	123
<표 IV-4> 국가주요지표 가족·가구 통계와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	125

## 그림 목차

<그림 I-1> Framework 작성 흐름도 .....	10
<그림 II-1> 사회의 질 조건 .....	24
<그림 II-2> 영아어린이집이용률, 2002-2013 .....	32
<그림 II-3> 성별육아휴직자수, 2002-2013 .....	32
<그림 II-4> 한국 가족변화의 맥락 .....	63
<그림 II-5> 가족·가구 통계의 프레임워크 .....	65
<그림 II-6> 개인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과 변화 .....	73
<그림 IV-1> 통계청과 OECD의 가족형태 분류체계 비교 .....	11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가족은 유례가 없는 속도로 변화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기능변화는 물론 한국의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가족규범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관련 인식의 변화는 그동안 가족에게 기대해왔던 가족원의 결속과 상호부양책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가족고유의 재생산 및 돌봄기능의 약화를 낳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가구규모의 축소 및 재생산체계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기능의 약화는 다양한 정책개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개인의 가족형태와 가족내 위치는 개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이해되어 왔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사한 생애과정과 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련의 표준화된 생애주기에 기초한 개인·가족과 사회정책의 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가치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가족구조와 형태가 갖는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주요한 기능들은 부분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서비스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세계화, 시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와 같은 사회변동과 맞물려 결혼은 더 이상 당위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과 여건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선

## 2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택사항으로 수용되면서 결혼 및 가족의 구성과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때로는 성별 및 세대, 계층간 이질적 특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에서는 제도적 혼인 및 가족관계의 구속력으로부터 개인권의 복원, 혹은 선택권의 확장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결혼 및 가족의 제도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은 혼인과 자녀출산이라는 가족고유 기능의 변형과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성인남녀의 제도적 결합으로서 결혼관계가 갖는 안정성의 약화는 곧 가족구조의 해체나 변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성원의 사회화 및 재생산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적인 섹슈얼리티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면서 혼전성관계가 증가하고, 혼전임신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는가 하면, 혼인관계의 해소 후 독신이나 재혼을 선택하는 인구층이 증가하면서 표준적인 부모됨이나 생물학적 토대에 근거한 단선적인 부모 자녀관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이혼율은 한부모와 재혼가족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는 한부모와 가구단위와 일치하는 가족일지라도 이들의 관계가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인지 계부모자녀관계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혼합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가치와 방식을 둘러싼 변화는 혼인을 통한 사회이동 역시 촉발하면서 이른바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혼보다 높으며, 이들의 이혼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결혼관계 및 가족구성의 방식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재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여성이 결혼 후 자신의 자녀를 국내로 데리고 오는 중도입국자녀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점차로 가족구성원의 국적과 혈연관계, 거주단위 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동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조금씩 다르지만(임인숙, 1999; 함인희, 2002; 김혜영, 2008, 2014; 장경섭, 2011; 김혜경, 2013), 적어도 이러한 변화를 과도기적인 것이거나 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하

는 다양한 정책의 입안 및 실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쟁과 갈등을 낳기도 한다. 요컨대 지금의 가족변동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현상을 가족재구조화로 볼 것인가 병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사적영역에 대한 정책개입이 갖는 의미와 한계, 정책개입의 방법과 범주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논쟁은 열외로 하더라도 가족변화에 대한 진단과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변화하는 가족실체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확한 정책개입의 지점과 범주의 확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가족의 유동성 및 탈표준화된 가족주기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근거자료로서 정확한 경험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가족은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한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포괄하고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 가족은 개인이나 가구를 단위로 관찰되며, 개인이나 가구단위를 중심으로 이들과 혈연 및 혼인, 입양 등 독특한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의 경계를 넘어 확대가족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부양과 돌봄, 자원교환을 측정하거나 가구를 형성했던 가족관계망의 해체와 새로운 형성을 포착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가족이 갖는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 가족측정의 범주 구분의 토대가 되는 가족개념조차 새롭게 도전받고 있다. 가족개념의 위축과 동요는 곧 ‘가족’ 관찰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가족과 가구의 범주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통계생산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지만, 그만큼 가족 통계생산의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족변동에 의한 가족역학(dynamics)을 반영한 정책개입과 지원체계의 설계에는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이들의 삶을 전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적 자료로서 통계자료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가족생활

#### 4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2003년 12월 제정된 이후 가족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정책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요구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정책설계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서 출발하지만, 현재 유형별 가족실태나 동거 및 분거가구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맥락, 예컨대 분거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돌봄 및 부양, 정서친밀성의 교환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거의 부재하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 역시 가구로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의해 어느 정도 파악되지만, 이들의 가구범주를 넘나드는 가족관의 부양과 돌봄, 정서적 지지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가족형성과 해체에 관한 제한적 정보는 결과적으로 결혼, 이혼, 동거 및 동성관계 등 변화하는 결혼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남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결혼제도에 진입한 경우조차 점차 결혼생활을 짧은 기간 내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통계생산체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가족 통계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을 확립함으로써 일관되고 의미 있는 자료 측정 및 통계자료 구축 방안이 중·단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가족·가구 통계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요구에 부합되는 가족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적실하게 포착해냄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족 통계작성과 생산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하는 가족관련 통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적실성있는 자료의 생산 및 구축, 해외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및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가족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족 통계의 기본 프레임워크 구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 생산의 현황과 생산방식을 비교·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가족영역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생산과 관리 및 공표를 위한 일련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족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위시하여 주제별로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분절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목적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공표되고 있다.

물론 공표되는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승인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절차나 내용상의 기본적인 점검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각 조사의 특성과 장점을 보장하면서도 가족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조사문항의 구성과 설계, 조사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정부분의 중복이나 부재는 물론 동일 내용임에도 측정방식의 차이나 시점, 주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각 조사목적에 합당하고 일정한 질적 수준이 보장된 가족·가구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자료의 분해와 재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와 충분 단위가 보장된 정보의 수집과 공표 관리 등의 체계적인 밑그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경제적 기본단위로서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 및 자녀와 노인 돌봄, 개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의 범위 및 권리의 범주를 결정하는 주요 단위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가족생활에 관한 공식통계와 주제 분류의 체계화 작업은 공·사적 영역 모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더욱이 가족의 형태적, 내용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가족의 경계와 범주가 유동적인 것이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의 구성을 통해 가족 통계의 생산과 집적, 관리, 공표 등의 작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식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반영 및 가족 통계 생산의 연속성과 현실성 사이의 균형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과제가 수행해야할 주요한 연구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실제 통계조사의 현실적 목적에 의해 가족정의는 ‘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명확한 범주의 설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단위를 실용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구를 넘어서는 가족정의는 가족수의 측정과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가족조사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가족을 가구의 맥락에서 정의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포착해 냄과 아울러 가족의 개념을 많은 사회정책입안자나 행정가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가족 개념으로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가구단위의 통계자료를 수집한 결과, 일부 가족의 정의가 기본 개념과 잘 정렬되지 않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면, 대체로 가구단위 가족조사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확대’가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나 평가 역시 가족에 대한 특정 사회의 가치와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일찍이 개인화 추세가 보편화된 서구사회보다는 가족주의적 유제가 남아있는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조사방식과 가족인식의 괴리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의 양태와 현실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가족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사회적 의제와 연관된 다양한 가족의 삶과 형태 측정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가족의 삶을 적절하게 추출해내는 논리구조를 조직화함으로써 가족·가구분야 통계의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개념들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통계는 최근 가족관련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측정 및 공표를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보다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통계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적 도구이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계의 하위영역으로 가족·가구 통계는 궁극적으로는 개인 삶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관계망에 의해 구성되는 가족의 영역은 사적영역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좋은 선택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라는 가치기준의 설정이 이미 다양해진 가족 삶에 대한 편하나 편견으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가구 통계에서는 하위 차원에 해당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가족원들의 상호부양 및 돌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원서비스의 개입을 통해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이 충분히 대체되거나 보완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가구 통계는 개인과 가구단위를 통해 이들 상호작용의 내용과 형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가족은 가구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상호작용의 범위는 가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의 설정과 단위별로 관찰·조사해야 하는 정보수집의 과정으로 이 모든 경우들을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관련 조사 및 관련 정보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구조의 특징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그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셋째, 가족·가구 통계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현재 사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에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이슈들에 대응하는 통계 프레임을 구비해야만 한다(이재열 외, 2014: 61).

넷째, 시간흐름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은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함께 생성과 성장, 해체 혹은 축소 및 확장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 가족·가구 통계는 가족의 시간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가구

의 변화는 비단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건사고나 사회변화와도 긴밀히 연동되므로 가족 통계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가족·가구 통계는 사회마다 특유의 문화전통과 가치규범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된 국제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국제기준에 따른 가족·가구 통계 분류보다는 유일하게 가족 관련 국제비교자료를 생산하는 OECD의 Family Database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비교를 위한 OECD의 기준 통계의 개념과 관련 자료생산방식은 물론, 우리의 가족 통계와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 통계를 비교해볼 것이다. 또한 가족·가구 통계의 기본자료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국가별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구센서스 결과에 준해 가구의 규모와 세대 유형 등의 자료를 생산해냄으로써 가족의 구조와 형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가족·가구 통계의 개념들에 해당하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준해 가족관련 통계 자료생산의 과정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족 통계 자료수집의 기준과 방식은 물론 자료원별 특징과 분류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특별한 가족쟁점을 다루면서도 가족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주제와 핵심질문에 부응하는 가족 통계 분류 및 생산주기 등을 검토하는데, 특히 자료원별 분류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가족 통계만으로는 복잡한 가족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렵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나날이 악화되는 조사현장은 가족의 형성과 해체, 재구성 등 가족역학 변화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 가족관계망의 확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되는 가족조사 방식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 삶의 변화는 다른 가족형태로의 이행은 물론 새로운 삶의 역동적 궤적을 의미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자료 역시 미비하다. 특히 가족의 빠른 변화는 가족개

념에 대한 합의도출 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개념정의의 문제는 곧 가족조사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정의와 그 측정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분석틀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통계가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책임주체에 의해 각각 생산, 분류 취합되고 있으며, 가구와 가족에 관한 타당한 분류방식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자료생산의 토대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각개의 자료가 갖는 역할과 위상은 물론 기본적인 가족 통계 생산의 준거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문가 회의와 학술대회: 프레임의 확정 및 공유

국내외 가족관련 이론의 검토는 물론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점검 및 수정, 그리고 공유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외 가족 통계생산현황 및 자료검토를 통한 가족 통계생산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도출은 물론 이에 기초하여 구성한 가족·가구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청취의 과정을 밟고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20명 이상의 가족연구자와 정책관련전문가 및 담당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가족 통계생산방식의 장점과 문제점으로부터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의 내용은 충분히 가족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수차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그 과정과 결과를 <한국 가족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공유는 물론 주요 내용의 수정과 공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족 통계생산방식의 성과와 한계 검토 및 가족정책쟁점과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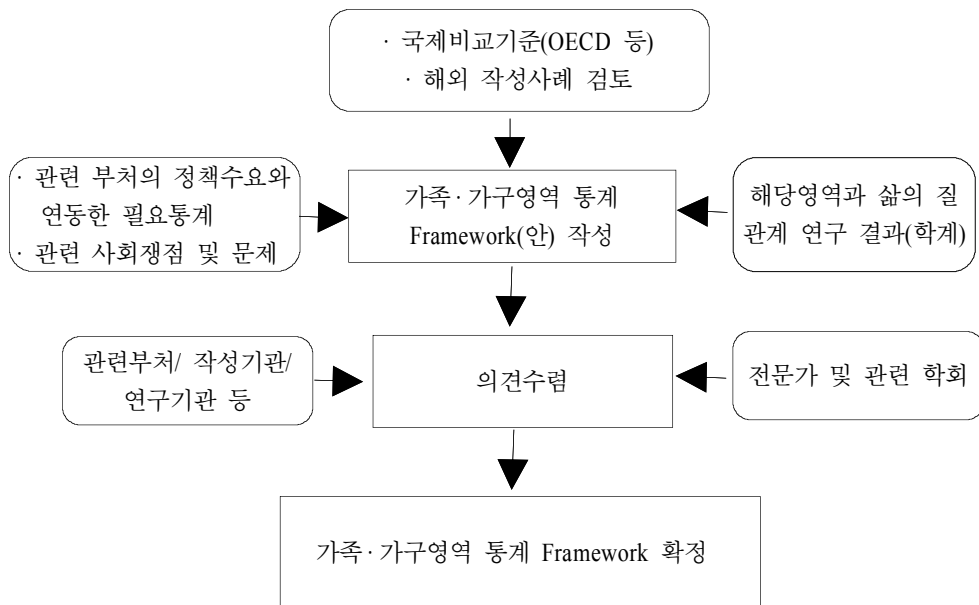
10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대응한 가족 통계 생산 및 집적 방식 논의

- 가족 통계생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기설정에 관한 의견청취
- 연구진이 구성한 예비 프레임워크案에 대한 적실성 검토
- 가족정책 관련 부처의 의견과 사회적 쟁점 반영

이러한 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통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의 단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Framework 작성 흐름도



### 3. 가족·가구 통계 개선·개발방안 및 가족·가구영역의 웰빙 시사점 도출

확정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에 기초하여 현재의 가족·가구 통계작성현황을 점검하고 각기 통계생산의 장점과 취약성 등을 비교평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가족·가구영역의 승인통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중복통계,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개발할 통계를 발굴함으로써 가족·가구 통계의 개선사항 및 개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출된 개선·개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주무기관의 책무성을 제시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책임과 역할의 명기는 개선·개발의 과제를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당연히 가족 통계의 개선·개발내용은 물론 개선·개발 추진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 추진주체 및 일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한국 가족의 상태와 변화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족의 삶과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조건과 웰빙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논거점을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가족·가구영역과 관련된 주요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현재의 상태와 향후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구영역과 연관된 삶의 질 지표와 국가 주요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지표명으로부터 작성방법, 주기, 자료출처, 산식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제2장

#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제 1절 가족가구의 개념

### 1. 가족의 개념과 요소

가족(family)은 인류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제도로 존속되어 왔다. 가족 역사학자인 T. Hareven(1987)은 가족제도가 생물학적 과정, 심리적 역동성, 문화적 가치관, 시장제도, 인구변천, 자본주의 산업제도, 종교, 정부정책, 그리고 그 자체의 역사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복잡한 사회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가족제도가 가지는 원초성으로 인해 원시사회부터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구성 원리, 정치사회적 관계, 생산·재생산 관계, 문화에 대한 연구와 다름없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인류학자인 이광규(1998: 233)는 “사회 내지 문화의 기저에 그 사회 그 문화만이 갖는 사회구조 내지 문화유형이 있고 이것이 가족이나 친족제도를 통하여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인류학에서 친족연구는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과 인간의 타 사회영역 즉 정치의 관계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주요정신을 반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권현익, 2015). 어떤 사회든 가족과 친족을 통해 사회가 구성되고 기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진 제도성(family as an institution)은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족이 가진 제도성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종속되어있기 때

문에 정의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현재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은 “특정한 시대적,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사회적 구성물(Gittins, 1985)”에 가깝다. 가족역사학자들은 인류역사상 단일한 유형의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학문적 연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가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제도라는 점은 연구자들에게나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전이 된다. 가족의 실태를 정태적으로 뿐 아니라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비교·문화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제도성에 핵심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화하더라도 핵심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요소의 내용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혹은 다른 사회문화적으로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 요소를 찾기 위해 학자들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았다. 서구학자들은 가족이란 “성관계를 허용 받은 최소한의 성인 남녀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된 자녀로 구성되며, 공동의 주거, 경제적 협력, 생식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회집단(Murdock, 1949)”이라고 보거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이외의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구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서로 결합되어 있다(Levi-Strauss, 1969)”고 보았다. 보다 최근 가족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사회학자 Popenoe(1988)는 “적어도 한 명의 성인과 한 명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며, 자녀출산과 사회화, 애정, 보호, 동료애 제공, 성적 통제, 경제적 협동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친족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Murdock이나 Levi-Strauss는 이성간의 혼인, 그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이거나 입양된 자녀를 가족의 정당한 멤버십으로 보았으나, 보다 최근의 사회학자인 Popenoe는 이성간의 혼인을 명시하지 않고 최소 한 명의 성인과 피부양자만 명시함으로써 혼인을 통하지 않은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서구학자들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핵가족의 정의와



유사하며, 가족이라는 제도를 멤버십(구조)과 기능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가족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구성된 가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통해 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와 재생산이 규율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한편 서구와 달리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친애의 정으로 접근하기 쉽게 되어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으로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김두현, 1948, 한국가족문화원 편, 2009에서 재인용)”이다. 한국 가족은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들이 “직계의 원리(이광규, 1998)”에 의해 규율된다. 한국 가족은 “아무리 구성원 수가 많더라도 그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한 세대에 혼인한 부부는 단 한 쌍이며, 이는 한국 친족의 출계율(rule of descent), 거주율(rule of residence)을 따르는 필연적 귀결(이광규, 1998:126, 김성철, 2015에서 재인용)”이었다. 즉 장자 중심의 직계가족이 사회적 규범이었으며, 종손과 지차 사이에 일정한 친족체계 상의 거리와 서열관계가 존재하였다. 동족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에서는 경제적 생산과 소비, 자녀양육, 부모 부양, 상호부조가 핵가족을 넘어서 친족집단의 기능이었고,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의 단위도 부계친으로 구성된 종족(宗族)이었다. 따라서 서구 가족과 달리 한국 가족에 대한 이해는 친족 개념을 벗어나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공동거주, 성적 규제, 출산과 사회화(양육), 경제적 협력과 상호 부양,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가족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 세대를 출산하여 양육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의 후속세대를 사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의 거주지에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가족원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공하여 가족원을 사회·정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독립시키는 것,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것은 가족의 가장 고유하고도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비교문화적으로 공통성이 크지만 여기에도 역시 변화의 요소가 나타났다.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전통적 가족에서 당연시되었던 경제적 생산단위로서의 가족기능보다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성적 규율이 약화되

면서 성적 통제기능보다 친밀감, 정서적 유대라는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기능 역시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가족멤버십(구조)과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론적 개념이 바로 가족발달(family development)이다. 가족발달이란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에 비유되는 개념이다.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발달하듯이 가족도 전 생애에 걸쳐 가족의 멤버십과 기능이 달라진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혼인으로 인해 형성되고 자녀출산으로 확대되고 자녀 독립으로 인해 축소되기 시작하여 배우자 사망과 본인 사망을 거쳐 소멸한다. 이러한 일련의 발달적 과정을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라 한다. 가족의 발달적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가족생애주기 개념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농촌사회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학자 Glick(1947)이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애를 단계화하는 시도를 하였다(White & Klein, 1996: 121). 이 개념은 이후 Hill, Duvall과 같은 미국의 가족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가족생애주기는 혼인, 출산, 자녀 결혼, 배우자 사망, 본인 사망 등과 같은 생애사건(life event)에 의해 단계화되기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만혼과 같은 인구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족발달 개념은 가족이 정태적인 삶의 양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삶의 양식임을 반영한다.

가족의 구조, 기능, 발달의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와 후기근대에 들어 그 양상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근대에 들어 동서양 모두 가족의 구조와 기능상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조가 단일화되었고, 가족 외의 타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들이 사라져 갔다. 또한 표준적인 삶의 양식의 확산에 따라 특정한 가족기능이 보편화되었으며, 모든 가족이 비슷한 유형의 가족생애주기를 따라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근대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개인 및 가족의 삶은 다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가족은 과거에 비해 멤버십과 기능 면에서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 당연시하였던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규범이나 혼인관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성관계 규범이 변화하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멤버십이 출현, 확산되었고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나타난 것이다.

가족의 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될 뿐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거나 예측되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적 체험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주관적 가치관이나 경험(실증)의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편향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보다 정확한 실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정밀한 통계 생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가족 통계에 적합한 프레임워크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2. 가구개념과 가족 통계

가구(household)란 하나의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단위를 의미한다. 가족이 구조, 기능, 발달 및 변화의 3요소 측면에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데 비해, 가구는 한 시점에서 주거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측정 혹은 관찰단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구는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생애과정을 거치는지를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증적 관찰이 용이하고, 그 결과에 준한 분류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사회를 막론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가구는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이기도 하였다(Hareven, 1986). 19세기 후반 미국 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전 인구의 약 3%에 불과하였다는 Hareven(1986)의 연구나 20세기 초 한 말 한성부 인구 중 혼자 사는 사람이 5.4%에 불과하였다는 조은(1993)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도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185만 2천 5백명으로 가구원 총수의 9.1%, 타인과 거주하는 경우가 65만 6천명, 기타 집단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가 36만 8천명으로 가족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함인희, 2008:15). 이렇게 동서양 모두 전통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거나 가족이 외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구를 구성하였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가구는 종종 경제적 단위이기도 하였다. 고용인, 도제, 하숙인 등 직업 훈련의 이유로 가족이외의 구성원이나 먼 친척을 받아들여이기도 하였고, 가족들 간에 구성원이 서로 교환되기도 하였다(Katz, 1975). 가구는 가족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 일정한 나이가 된 자녀를 독립시키는 경우, 빈곤 등의 사유로 자녀를 남의 집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가족이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이렇게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성원 외에도 친족 또는 비친족관계의 타인이 한 주거지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의 가구는 훈련장(workshop)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족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서구에서는 19세기에 도제제도가 쇠퇴하면서 대신 하숙제도가 발달하였다.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하숙제도는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 대안이 되었고, 이렇게 청년층의 이주가 활발해진 19세기 미국 도시에서 전체 가구의 약 20~30%는 하숙인을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었다(Hareven, 1986).

이상에서 가족 삶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가구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 가능하다. 가구와 가족이 일치하는 경우는, 가족이 모두 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되 타 구성원은 하나도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의 가족과 가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인에 기초한 부부와 혈연 및 입양에 근거한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방식, 즉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 핵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과 가구가 일치하며 가족의 기능이 모두 가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구라는 관찰단위를 통해 가족의 삶이나 제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이러한 일치에 준해 다양한 조사와 통계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이후 발전된 근대적 통계에서 가족은 종종 조사단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빈곤조사의

효시 격에 해당하는 Seebohm Rowntree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1901년 발표된 S. Rowntree의 「Poverty, A Study of Town Life」에서는 영국 York 시 빈곤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11,560 가족의 46,75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 식료품, 피복비 등의 필수품 구입에 필요한 최저비용을 산출하였고, 이 때 가족의 크기(family size)를 고려하였다. Rowntree는 1935년과 1951년에도 각각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York 시의 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는 가족 통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초기 사회통계에서 가족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가족과 가구가 일치하는 경우, 사회통계에서 가구는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관찰단위가 된다. 그러나 가족과 가구가 일치하지 않는 전근대 사회나 후기근대사회 맥락에서 가구라는 관찰단위는 더 이상 가족의 삶과 가족제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단위가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보살핌과 양육 및 경제적 부양은 통상 동일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투입 과정에서 일차적인 고려 대상 역시 동거의 단위로써 직계가족이 상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법률적, 제도적임은 물론 정책 및 통계적으로도 가족정의의 문제는 가족의 유형과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으로 이는 가족의 정의를 제한하고 누구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국한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의 특성과 현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는 더욱더 제한적인 범주와 관계만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 따라서 가족 통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현재적 관찰단위와 개념정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대체 및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가족 통계생산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체계화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구 통계의 수집과 분석 목적이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보고, 가족의 구조, 기능,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되, 가구라는 측정단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가족과 웰빙의 관계

### 1. 가족과 삶의 질

가족 통계를 생산 구축하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가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을 위한 적절한 공공 개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가족 통계를 사회통계의 일환이라고 할 때 가족 통계의 측정 목적 역시 사회통계의 측정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통계의 측정 목적은 국민 삶의 질과 사회의 발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간 웰빙(human well-being)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웰빙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이재열 외, 2014). 최근 들어 인간 웰빙이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 행복보다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의 의미로 진화하고 있다(Shah and Marks, 2004: 2; 이재열 외, 2014에서 재인용).

경제적 자원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국가나 개인을 단위로 한 비교연구에서 흔히 지적되는 바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세계적인 조사에서 모두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웰빙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거시 수준의 경제 성장과는 구분되는 개인들의 웰빙에 대한 미시적 관심은 웰빙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실제로 OECD의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분석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웰빙이지만(이재열 외, 2014), GDP같은 거시적 경제 통계만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조건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OECD, 2014).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초점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가구의 차원으로, 그리고 전체 국가/지역/공동체의 집합적 수준에서 개인의 웰빙으로, 양적 성장에서 인구집단내/세대내 평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이재열 외,

2014).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들은 측정모델이나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 경제적 요소,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제도적 요소, 신체적/인구학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김승권 외, 2008). 아래 <표 II-1>에 요약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소에는 소득 및 생활수준, 주거, 교육수준, 직업, 여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사회관계적 요소에는 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계가 포함되며, 사회심리적 요소에는 성격, 문화가, 환경적 요소에는 물리적 환경, 재난, 지역사회, 치안이, 제도적 요소에는 민주주의 및 사회보장이, 신체적/인구학적 요소에는 건강, 연령, 성이라는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관계적 요소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또는 이웃관계와 같이 일차적인 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삶의 질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 삶의 질 구성요소

영역	하위요소		
경제적 요소	-소득 및 생활수준 -학력	-주택 -직업	-여가
사회관계적 요소	-친구관계 -가족생활	-결혼생활 -이웃관계	
사회심리적 요소	-성격	-문화	
환경적 요소	-환경 -지역사회	-재난 -치안	
제도적 요소	-민주주의	-사회보장	
신체적/인구학적 요소	-건강	-연령	-성

자료: 김승권 외(2008). p32에서 재구성

개인들은 가족을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

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을 통해 재생산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돌봄과 지원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위와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활동과 역량발휘에도 긍정적 기제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가족생활의 안정과 만족감은 직장에서의 성취 및 만족도와 직결된다(Greenhaus & Powell, 2006).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과 애착관계는 개인의 안정적인 정체감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듯 가족은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조은경·정혜정, 2009; 조중열·조금숙, 2004; 박종민·김서용, 2002; 나은영·김혜숙, 1997).

특히 한국인은 사회보장제도, 민주제도와 같은 국가 공공 영역에서도 가족생활, 친구관계, 결혼생활과 같은 개인관계적 삶의 영역에서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박종민·김서용, 2002). 연구자들은 가족생활 중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적한다(조은경·정혜정, 2009; 박영신·김의철, 2006). 김승권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가족생활과 가족건강, 본인의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 건강 등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21개 행복지표 중에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 지표와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였다. 또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들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는 비록 개별 가족구성원이 이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행복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II-2〉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가중치

행복에 미치는 요인	21개 행복지표 중 순위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위
가족의 건강수준	2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위



행복에 미치는 요인	21개 행복지표 중 순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10위

자료: 김승권 외(2008).

## 2. 가족과 사회의 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개념인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은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을 넘어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의 질 개념은 개인적 삶의 질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있는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태동되었다. 개인적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자칫 개인적 삶의 질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의 질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이재열, 2009).

아래 <표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네 가지 구성 요인을 가지고 있다(Herrmann, 2006). Herrmann(2006)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포용성이란 일상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체계, 제도, 기관, 구조)안에서 통합되어 있거나 그렇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 규범과 가치의 통합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관계의 강도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역능성이란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리고 가깝거나 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수단과 과정들을 의미한다.

〈표 II-3〉 사회의 질의 요인과 영역

요인	영역	하위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li> <li>- 재정적 안정</li> <li>- 주거</li> <li>- 건강</li> <li>- 교육</li> <li>- 사회적 관계</li> <li>-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복지, 취업안정성, 고용의 질</li> <li>- 사회보장, 소득, 임금 지원체계에의 의존</li> <li>- 주거의 질과 비용, 환경의 질</li> <li>- 보건서비스의 질, 라이프스타일, 신체·정신건강</li> <li>- 교육과 기술의 수준 및 분배</li> <li>- 가족, 친구, 자선단체에의 의존성</li> <li>- 돌봄에 사용된 시간, 이동시간</li> </ul>
사회적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적 권리</li> <li>- 노동시장</li> <li>- 공적 서비스</li> <li>- 사회적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적/정치적 권리, 사회권, 공민권</li> <li>- 유급노동에의 접근성, 고용의 질</li> <li>- 보건 서비스, 교통, 상업시설, 레저 서비스</li> <li>- 우정,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li> </ul>
사회적 응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li> <li>- 통합적 규범과 가치</li> <li>- 사회적 관계</li> <li>- 정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화된 신뢰, 특정한 신뢰</li> <li>- 박애주의, 정의, 공동체성, 호혜성</li> <li>- 수평적 관계망, 수직적 관계망, 연계</li> <li>- 민족/국가, 지역/지역사회/지방의 상호관계</li> </ul>
사회적 역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역량과 관계성</li> <li>- 시민권</li> <li>- 제도 및 시민참여에 대한 접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정치적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 조인의 유무, 직업적 융통성, 보상적 사회화, 개인적 관계</li> <li>- 새로운 조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방성, 자발적 행동에 대한 준비성</li> <li>- 선거 및 정치적 접근성, 정치적 접근성에 대한 재정적 독립, 물리적·사회적 독립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유무</li> </ul>

출처: Herrmann(2006), p32-33

이러한 사회적 질 개념은 미시(개인)-거시(사회구조), 그리고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구분 및 연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의 영향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회의 질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4; 이재열, 2009; 이희길·심수진, 2009).

〈그림 II-1〉 사회의 질 조건

사회수준의 발전			
안전사회/ 위험사회	사회경제적 안전성 (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 (Social Cohesion)	신뢰사회/ 불신사회
체계/제도	재정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보건 노동 교육	신뢰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공동체/집단
조직	사회적 포용성 (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 (Social Empowerment)	생활세계
포용사회/ 차별사회	시민권 노동시장참여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지식 노동시장참여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사적인 관계	활력사회/ 무기력사회
개인수준의 발전			

자료: 이재열(2009). “사회와 질과 삶의 질”,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 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편 가족은 미시수준과 거시수준을 연계하는 매개체이다. 사회구조가 미성숙하거나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 시민으로서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대신, 가족이라는 중간 조직을 통해 국가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가족을 통해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귀속되고, 가장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공공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지만 저개발국가에서는 가족이 개인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의 가족에서 출생하였는지, 즉 성취지위보다 귀속지위가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한국 사회는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그리고 명시적·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의무·권리를 강화하고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적 가족주의’가 발달한 사회이다(장경섭, 2011). 이러한 가족주의는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가족을 떠나서는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생애과정의 목표는 개인적 성취보다는 가족의 존속과 성취이다(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립, 2015).

즉 규범적, 이념적 차원에서 가족주의가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관행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가족 단위의 생존 방식을 강화한다.

가족은 특히 사회적 응집성,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원되는 자원(Lin, 2001)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돕고(Coleman, 1988),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Fukuyama, 1995).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에서도 잘 나타나있듯이 사회자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참여에 기초한다. 결사체 혹은 공동체적 사회관계망은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이라는 규범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자본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은 가족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된다(Bian, 2007; Lin, 2001).

개인은 생애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장기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즉각적인 교환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호혜성의 전망을 습득하며, 이자적인 호혜성이 아니라 일반화된 호혜성의 개념을 습득한다(진미정, 2015). 이자적인 호혜성이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라면, 일반화된 호혜성은 관계망 안의 다른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은 신뢰의 규범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발달에 대한 Erikson의 이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족은 아동이 태어나 기본적 신뢰감을 배우고 형성하는 곳이다. 가족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문화를 만들고 이를 내면화하는 곳이다. 가족의 결속력이나 응집력, 헌신과 유대는 곧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다.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의 총괄체계를 연구한 이재열 외(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의 차이는 양적인 성장 수준이 아닌 질적인 수준 특히 사회자본 수준에 있다. 세계가치조사자료를 분석한 국제 비교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수화된 신뢰수준은 높지만 일반화된 신뢰 혹은 공적 신뢰 수준이 낮은 이중적 구조의 저신뢰 사회이다(장수찬, 2004). 사회자본의 수준의 높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사회는 독특하게 결사체 참여수준, 사회자본, 정부신뢰의 수준 간 악순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장수찬, 2002).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결사체 참여 등 정치참여가 높은 경우에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화된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 사이에는 역설적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화된 신뢰가 낮아질수록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정집단에 대한 특수화된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특수화된 신뢰가 높아질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존재하게 된다. 사회적 응집성은 가족을 통해 발달시킨 특수화된 신뢰를 일반화된 신뢰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이 가진 사회자본을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가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진미정, 2011).

### 제3절 가족관련 사회문제

#### 1. 가족문제와 정책관심

가족제도는 전근대-근대-후기근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크게 변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따라 가족제도가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 어떤 정합성 혹은 부정합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사회문제화로 규정되고 호명되어 나타난다. 18세기 말에 등장하여 서유럽과 북미 전역에 점차 규범으로 변해간 개인생활과 남녀관계에 대한 여러 이상들의 집합이 절정에 이른 1950년대의 가족은 근대가족의 표상이었으며(Coontz, 2005, 김승욱 옮김, 2009: 26), 이는 점차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사회에도 전파되었다. 그러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모델이 북미와 서유럽에서 지배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 데는 150년 이상이 걸렸으나 그 모델을

무너뜨리는 데는 2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지적조차 매우 설득력있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Coontz, 2005, 김승욱 옮김, 2009: 423).

통상 사회와 가족의 변화 속도에 간극이 발생하고 가족제도와 가족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앞서 가족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제도는 멤버십에 대한 규범이 명확하게 존재하였고, 경제적 협력과 공동생활 중심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가족은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집단으로 한 집에 거주하는 생활공동체인 것이 분명하나, 핵가족 보다는 친족집단 및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이 친밀감 중심의 특정기능수행의 집단으로의 정체성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가족의 근대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혈통에 근거한 직계적 원리보다는 가족원과의 정서와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속성에서 특별하고 영속적인 감정적 유대와 친밀성에 강조점이 주어진 것이다. 최근의 가족학자들은 가족을 정의할 때 정서적 연대를 강조한다. ‘혈연, 입양, 결혼(동거 포함) 등으로 연결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헌신(사랑, 정서적 유대)을 기본으로 다양한 역할수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도미향 외, 2009:18)이나 ‘둘 이상의 성원들이 혼인이나 혈연, 입양, 동거 등에 의해 성 또는 세대관계를 구성하고, 정서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는 집단체계’(유계숙, 2007:17)로 정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의는 과거에 비해 가족구성 원리의 다양성과 선택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정의와는 구별되며, 함께 생활하거나 가족원의 공동체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근대 이후 가족은 개인들을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미시적 기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터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Parsons, 1955).

가족에 대한 근대적 접근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가족제도의 변화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조(멤버십)의 측면에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57년부터 이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무과실이혼법도 도입되었다(Coontz, 2005, 김승욱 옮김, 2009: 431). 특정한 사유나 배우자 과실이 있을 때만 허용되었던 이혼이 점차 배

우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되면서 이혼은 더욱 용이해졌다. 결혼이 남편역할과 부인역할의 결합으로 기능해 온 전근대사회와 달리 근대사회에서는 개인화된 자아와 자아의 결합으로 변모하면서, 자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표현적 이혼(expressive divorce)”이 증가하였다(Cherlin, 2009:89).

생애과정 전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부관계가 이제는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서 가족이 제공하였던 안정성(stability)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거(cohabitation)이다. 동거는 이성간 혹은 동성간 법률혼의 제약 없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결혼에 비해 느슨한 관계성을 갖는다. 형성과 해체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제로 관계의 지속기간과 해체율이 결혼에 비해 낮다(Cherlin, 2010).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났는데, 바로 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아동 중 40%는 15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부모가 동거했던 아동의 약 75%는 15세가 되기 전 부모가 헤어지는 경험을 한다(Cherlin, 2009:17-18).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부모가족이 형성되는데, 주로 어머니가 양육을 맡기 때문에 여성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여성과 아동의 빈곤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McLanahan, 1997). 남성 생계부양자가 사라지면서 양육을 맡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한부모들은 부양자 역할과 양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때 양육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Edin & Lein, 1997). Pearce(1976)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로 개념화한 바와 같이 빈곤은 성별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별화된 상태이며,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은 여성가구주들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보호기능 약화의 문제를 동반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보호를 덜 받으며 따라서 건강, 학업성취도, 비행행동 등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McLanahan, 1997).

최근에는 이혼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부부가

모두 있는 가족에서조차 아동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감소를 경험한 유럽에서는 여성 노동력이 중요해졌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가족 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신사회적 위험’이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해 부족한 노동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다(전광희, 2005). 동거커플이나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구조를 수용하는 유연한 정책과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접근을 펼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가족문제도 큰 맥락에서는 서구와 다르지 않다.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불안정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능면에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서구사회와의 차이점은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제도적 가족주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실태와 정책적 개입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개입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시작되었으며 개입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한국 사회의 가족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서구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규범이 변화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2010년 이혼 상태인 가구는 126만7000명으로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가 되었다(통계청, 2010인구총조사).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 역시 심각하다. 통계청(2013)의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16.7%, 100~200만원 미만인 51.8%, 200만원 이상이 31.4%였고, 평균 월 172만원 수준으로, 이는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연 4,233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생애과정으로 인식되어 부부(단독)가족은 유자녀가족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자발·비자발적인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부부가족을 꼭 과도적 형태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1990년대 이래 한국 기혼여성 중 무자녀율은 7% 이



상 유지되어왔다(김한곤, 2014). 유자녀부부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자녀 간의 생물학적 관계와 양육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려워졌다. 이혼과 더불어 재혼가족과 혼합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혼인건수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로 적지 않다(통계청, 2014). 특히 황혼기 이혼이나 사별한 노인인구의 재혼, 동거에 의한 부부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또 다른 현상은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노인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취업 및 진학 등의 이유로 공간적 분리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최인희, 2015). 비록 비동거 형태이나 노년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유대와 공조체계를 개별가구차원에서 구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거주하며 상호지원을 교환하는 수정확대가족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세대상 분리된 2개의 가구가 빈번한 접촉 등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젊은부부가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며 자녀양육을 지원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가족에 대한 정확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서는 가구를 넘어서는 가족원끼리의 관계망을 적실히 포착해낼 필요가 있다. 일차적인 준거로 동거와 비동거를 구분하고, 돌봄이나 상호자원공유 및 경제적, 정서적 지원방식과 정도, 교류의 종류와 질 등에 대한 후속적 관찰을 통해 한국의 가족구조의 특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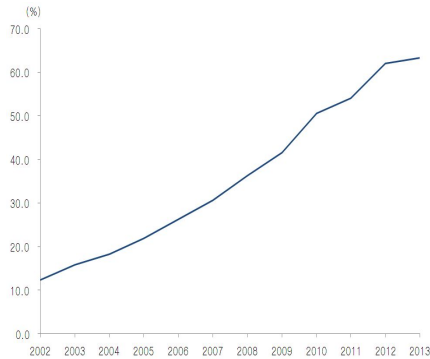
두 번째 문제는 가족기능 측면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공백과 정책개입의 확장이다.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 중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랑과 감정적 지원을 통한 개인의 정서적 안정이며, 사회적으로는 자녀양육과 아동발달 및 사회화와 노약자의 돌봄의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더욱 전문화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확장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나, 적어도 돌봄의 기능은 약화되고 사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사회에서의 피로와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

구증가로 가족에 대한 회구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 및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결혼과 가족구성을 회피하거나 가족에서 가족원간의 방임이나 학대, 심지어 폭력발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심리·정서적 욕구가 가정 내에서 충족되길 소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가족원의 관계의 질과 만족도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정서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적 표현의 자율성과 소비주의적 성애가 강조되면서 친밀감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부모자녀관계 또한 친밀해질 가능성과 소원해질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 투자가 미비하고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돌봄관련 지원정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을 대체하는 보육서비스가 급성장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전체 영아 중 12.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63.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사용자는 2013년 기준 약 7만 명이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취업주부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양육을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영유아기 부모자녀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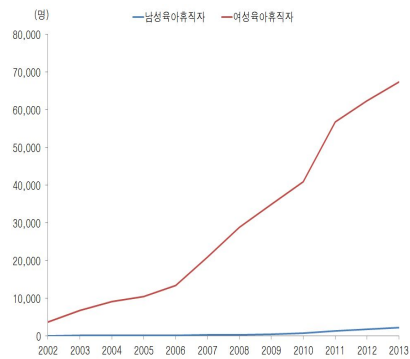
〈그림 II-2〉 영아어린이집이용률, 2002-2013



주: 1) 영아 어린이집이용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 수 ÷ 만 0-2세 주민등록인구) × 100.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그림 II-3〉 성별육아휴직자수, 2002-2013



주: 1) 육아휴직자수는 해당년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 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또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족원간의 상호구속력이 약화됨에 따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위기청소년의 수가 늘어날 것인가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실태를 살펴보면<sup>1)</sup>, 가정폭력은 크게 자녀, 부부, 가족원의 폭력으로 구분되며, 그 속에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으로 다시 분류되고 있다. 부부폭력은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발생률은 전체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등락의 폭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결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참고.

〈표 II-4〉 부부폭력 발생률

	2004년	2007년	2010년	2015년
부부폭력 발생률	44.6%	40.3%	53.8%	45.5%

자료: 2013년 가족폭력실태조사. p142

한편, 자녀폭력 발생률은 만 19세 이상의 기혼자(사실혼 포함)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380명을 대상으로 자녀폭력학대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본인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한 것과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에서 전자의 경우는 46.1%, 후자의 경우는 31.3%로 확인되었다. 자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4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방임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가족원의 노인폭력 실태 역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코 낮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폭력 또한 대부분 정서적 폭력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서적 폭력 중에서도 모욕적인 말을 통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며, 대회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의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노인의 경우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5.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노인폭력이 가족 내에서 일상화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으로<sup>2)</sup> 201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3,076건이며, 그 중 재신고 사례는 1,840건, 그리고 신고된 것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6,796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사례유형은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 친부모가족외 형태, 대리양육 형태, 기타 등으로 파악된다. 친부모가족외 형태로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 소년소녀가정으로 구분된다. 가족유형별로 아동학대 발생구성비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2,581건(38.0%), 친부모가족

2) 아동학대현황보고(2013년), 보건복지부

외 형태 3,427건(50.4%), 대리양육 형태 404건(5.9%), 기타 46건(0.7%)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부모가족 외 형태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20.0%, 14.4%, 2.3%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6.7%로 나타나 2012년 39.8%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역시 친부모 가족 325건(33.2%), 친부모가족외 형태 548건(55.9%), 대리양육 형태 89건(9.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위기문제 역시 가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작용한다. 2010년 전국청소년위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생 총 89,827명 중 취약·위기청소년은 총 3,7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취약·위기청소년의 거주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나 조부모와 살지않는 경우가 57.8%, 모두 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가 16.2%,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가 6.8%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가족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족형성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역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고도의 경쟁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강조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높은 교육열로 이어지고, 자녀세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경력개발을 요구받게 됨으로써 가족을 통한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월평균 자녀양육 비용이 2003년 74만 8천 원에서 2012년 118만 9천 원으로 증가하였다(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교육비, 주거비, 정보통신비 등 일상적 재생산비용 증가는 가족구성의 기회비용 역시 증가시킴으로써 가족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혜영, 2008).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낮은 출산율과 혼인율은 모두 가족형성과 확대유지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떠나서 해석하기 어렵다.

세 번째 문제는 생애과정의 변화이다. 가족발달상의 전환과 이행은 곧 가족형태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가족의 생애사건과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이행되는 생애주기상의 변화는 가족생활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의 횟수와 유형의 집계

는 가족의 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진미정·변주수·권순범, 2014)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 변화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평균수명의 증가로 가족생애주기의 절대적 시간은 연장되었다. 초혼연령이 상승하여 개인의 생애과정 중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형성된 후 배우자 및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절대적 기간은 증가하였다. 다만 개인 생애과정에서 가족생애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확대기, 축소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되었고, 확대완료기, 축소완료기는 연장되었다. 다시 말해 가족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단축된 반면 외양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발달적 변화시기가 길어졌다. 해체기는 부부만 남는 시기에서 배우자(남편)가 먼저 사망하고 부인이 혼자 남는 시기이다. 최근에는 남성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성차가 감소하여 남편 사망 후 부인이 혼자 생활하는 해체기가 단축되었다. 사별자의 감소로 인해 비전형적 가족생애주기 유형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이혼자와 재혼자만 비교하면 비전형적 가족생애주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의 변화는 가족 통계 및 가족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횡단적 접근의 통계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가 없는 안정적 시기이지만 내부적으로 가족원의 발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해체기의 단축으로 노년기 부부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부로서의 생애과정이 길어지고 부양과 돌봄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족 통계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향후 노년기 부부관계나 동반자 관계에 주목하여 관계 만족도, 안정성, 동거 여부, 해체 가능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100세 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인가구의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전통가족이나 근대가족보다도 더 다양한 반면, 그 관계는 느슨하고 험거운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근대가족은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의 개인권 인정, 가족의 구조적 안정성 약화,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 확대는 개인 및 가족 삶의 위기로 작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복잡다단한 국내외 상황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이나 보호 및 훈련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구조적 안정성 약화는 개인에게 자율성과 개인화된 삶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위기에 빠진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약화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화되고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가족의 기능은 사회복지나 제도로 위임되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가족이 수행해왔던 자녀재생산과 자녀 돌봄 및 노약자 돌봄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족정책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 유사(Quasi)가족,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공동체, 지역연대, 사회복지제도, 일터, 사회구조 등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 2. 가족생활과 통합영역 쟁점

사회통계는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는 동시에 여러 영역들에서 함께 등장하는 관심사, 즉 ‘통합영역 쟁점(cross-cutting issues)’을 포괄한다(이재열 외, 2014). 이러한 통합영역 쟁점들은 모든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들을 반영하는데, 사회통계의 총괄체계를 연구한 이재열 외(2014)에서는 안전, 공공복지, 인권과 차별, 가치와 규범,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지속가능성의 여섯 개 쟁점들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통합 영역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통계생산 주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관심사에 대해 어떤 영역의 어떤 통계정보들을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영역적 쟁점이 가족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 쟁점은 가족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생활환경으로서 얼마나 안전한지와 지역사회가 가족에게 얼마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와 관련된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가족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2014년 우리나라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17,791건으로 2005년 4,633건에 비해 2.84배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두 가족 중 한 가족은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가정생활 안에 폭력적 문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단위: %, 명)

구 분	자녀폭력 발생율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 한폭력)			
내가 자녀에게	46.1	17.5	4.8	18.3	42.8	5.0	(1,380)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	9.8	2.6	10.1	28.8	3.8	(1,33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된 값

2) 자녀폭력 발생율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공공복지’ 쟁점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과 효과와 관련된다. 가족의 전통적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아동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한부모와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도록 돕는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서문희 외, 2012), 이러한 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양육지원 서비스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같은 학령기 아동의 양육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돌봄의 사회화로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이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배우자가 주돌봄자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자의 고령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표 11-6〉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단위: 명, %)

	2004	2008	2011	2014
	주돌봄자	주돌봄자	주돌봄자	주돌봄자
배우자	36.1	46.9	53.0	37.7
장남·며느리	28.6	20.6	20.5	24.0
그외 아들·며느리	12.0	9.4	10.5	13.6
기타	23.3	23.1	16.0	24.7
계(명)	822	903	1,037	1,430

출처: 정경희 외(2005: 273); 박명화외(2009: 901); 정경희 외(2012: 342); 정경희 외(2014: 359)

‘인권과 차별’ 쟁점은 아동과 여성 등 취약한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 개입이 요청되며, 이 경우 가정유지와 인권 보호간의 조화가 필요하다(양현아, 2015).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은 존립을 지지할 가치가 없다는 시각 위에서 피해자가 가족 밖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혼, 무자녀가족, 동거, 동성간 관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관련된다.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은 취약계층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이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사회적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다(진미정, 2015).

〈표 II-7〉 국내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힘든 점 없음	외로 움	가족 갈등	자녀 양육 /교 육	기관 이용	경제 적 어려 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음식	편견 , 차별	기후 차이	기타
2년 미만	6.9	45.8	6.7	10.2	9.6	14.2	71.6	33.5	27.4	9.6	8.8	0.5
2-5년 미만	10.5	34.6	10.2	19.0	8.8	25.5	57.3	31.4	16.5	14.7	5.5	1.3
5-10년 미만	15.7	32.3	10.1	23.5	7.9	38.5	34.5	25.4	8.7	22.2	3.2	1.7
10-20년 이하	18.7	28.2	10.8	25.3	7.0	44.9	20.1	23.6	6.4	25.5	1.7	2.1

자료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국내 거주기간 20년 이하 결혼이민자·귀화자만 포함)

출처 : 김이선 외(2014), p7

‘가치와 규범’은 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통합영역 쟁점이다. 가족구조와 기능은 가족규범을 반영하여 작동한다. 결혼에 대한 규범은 결혼의 당위성, 결혼연령,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가족형성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혼인율, 동거율, 초혼연령, 초산연령 등으로 표출된다.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규범은 이혼가능 사유,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는 수용,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이는 이혼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쳐 이혼율로 표출된다. 남녀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는 가족 내부적·외부적 젠더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 역할 분담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노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책임에 대한 규범 역시 실제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돌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사회조사의 경향을 보면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여, 자녀/가족 단독 책임이라기보다는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표 11-8〉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1998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부모 스스로	8.1	9.6	7.8	11.9	12.7	13.9	16.6
가족	89.9	70.7	63.4	40.7	36.0	33.2	31.7
장남/맏며느리*	22.4	21.4	19.5	17.3	13.8	7.0	6.2
아들/며느리*	7.0	19.7	8.1	6.7	7.7	3.9	3.5
딸/사위*	0.5	1.4	0.9	0.9	1.8	0.8	0.7
모든 자녀*	14.5	27.6	49.2	58.6	62.4	74.5	75.4
능력 있는 자식*	45.5	30.0	22.2	16.4	14.3	13.9	14.2
가족과 정부·사회	*1)	18.2	26.4	43.6	47.4	48.7	47.3
정부·사회	2.0 <sup>2)</sup>	1.3	2.3	3.8	3.9	4.2	4.4
기타	0.0	0.2	0.1	0.0	0.0	0.0	0.0

주 : 1) 1998년 조사에는 해당문항 없음.

2) 1998년 조사에는 '사회 및 기타' 문항에 대한 응답임.

3) \*: 2012, 2014년 조사에서는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출처 : 통계청(2014). 사회조사.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은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구조, 생활,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는 쟁점을 포함한다. 가족제도는 가족의 물질 토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 또는 소득계층의 쟁점을 배제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낮은 사회계층의 가족은 혼인, 이혼, 동거, 출산, 자녀양육방식, 젠더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높은 사회계층의 가족과 다르다. 가족구조의 분포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쉽게 드러난다. 사회조사자료를 비교해 볼 때, 1인가구는 소득하위계층에서 가장 많고 상위계층에서 가장 적은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자녀는 소득하위계층에서 가장 적고 상위계층에서 가장 많다. 사회계층이 가족을 통해 귀속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곧 가족 통계의 목적 중 하나이다.

〈표 II-9〉 2014년 소득계층별 가족유형

(단위: %)

	1인가구	부부단독가구	부부자녀가구	한부모/조손가구
하위	48.1	24.3	12.3	4.3
중위	16.7	16.8	46.0	4.5
상위	8.7	12.0	61.6	4.8

출처 : 진미정(?)

‘지속가능성’은 가족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구성과 소비가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가족구조는 자원사용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증가는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지만(Jamieson, 2014), 이러한 개인 삶의 방식은 개인 가치관의 반영인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처해있는 특정 사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협요인으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쟁점 외에도 가족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거시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먼저 정보화의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가족의 일상생활과 소비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가족생활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ICT는 다양한 의사소통양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거가족의 생활이 보다 용이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측면에서 가족은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주를 체감하는 주체가 된다. 북한이탈주민가족,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가족의 증가는 모두 세계화 현상과 관련된다. 이러한 가족들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현상을 증폭시키며, 가족규범 및 생활의 다양성을 동반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문화와 가족규범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옥선화 외, 2014). 이들이 본국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문화접변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족들만을 유입시킬 뿐 아니라 기러기가족을 증가시키는 배경이 된다. 기러기가족이라 불리는 장기분거가족은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하여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확

연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최연실, 2015).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주말부부, 월말부부와 달리 비교적 장기분거이며, 가구분리가 초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띤다. 기러기가족이 양산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영어와 세계화 열풍, 국내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과 선진 교육제도에 대한 선망이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메가트렌드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가족구조와 관계,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가족생애과정의 절대적 기간을 증가시키고, 부부만 함께 사는 기간을 증가시킨다(진미정 외, 2015). 가족구조적 측면에서는 노인부부가족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동반하고, 전 생애에 걸친 세대관계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노인 돌봄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 가족 내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가족과 사회 간 분담 시스템 역시 중요해진다.

## 제4절 가족 통계적 표준집단 및 취약집단

### 1. 통계적 표준집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이며 관계이다. 가족제도 자체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변천할 뿐 아니라 개별 가족의 삶도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 기능, 관계가 변화한다. 가족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표준집단과 취약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가족 통계상의 기준점이 되는 집단이며, 통계적 취약집단은 표준집단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은 가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문화적, 통시적 통계생산이 용이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통계적 표준과 규범적 표준은 서로 다르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의 원리에 의해 작동했던 한국 전통가족에서는 가구단위로서의 기록이외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계도와 역사를 기록하는 문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와 관리의 목적에서 기록된 통계적 표준은 동거의 단위로서 호구를 기록 관리해왔다(조은, 1990). 직계가족의 원리상 여러 명의 자녀 중 장남만이 결혼 후 부모와 동거동재하게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독립하여 주거와 생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이 규범적 표준인 경우에도 실제 수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핵가족이다. 다만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차이는 전통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신분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친인척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신분이 낮은 동거인들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근대사회에는 그야말로 혼인과 혈연에 의한 핵가족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규범적 표준과 통계적 표준이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후기근대의 변화하는 가족의 상과 제도를 비추기 위한 통계적 표준집단은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통계생산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후기근대의 변화하는 가족현실은 다시 통계적 표준집단으로 설정된 핵가족과 불일치하는 가족관계 및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 통계의 표준집단은 가족의 축인 세대(generation)와 젠더(gender)를 모두 포괄하는 핵가족이다. 핵가족 중에서도 이성간 부부와 미성년자녀 세대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 가족을 표준집단으로 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표준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부부관계는 이성간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함께사는 자녀는 미혼자녀가 아니라 미성년자녀이다. 무자녀가족은 표준집단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녀의 수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의 성년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일차적인 정책적 관심을 고려하여 미혼자녀 대신 미성년자녀를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가족과 가구단위가 일치한다. 이러한 표준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모든 가족구성원의 주거공유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2. 통계적 취약집단

통계적 표준집단을 기준으로 가족 통계를 생산할 때 문제가 되는 점은 다양한 가족집단이 통계생산에서 배제되거나 다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가 계획될 때 비중이 낮은 가족집단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취약집단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통계가 생산되기 어렵다. 앞서 통계적 표준집단이 규범적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통계적 취약집단이 곧 사회적 취약집단이나 규범적 소수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취약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가정한 표준집단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표준집단의 세 가지 특성 중 첫 번째인 이성관계 파트너십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이 이성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성관계로 이루어진 경우와 파트너십이 법률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거(사실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이성간 결혼, 이성간 동거, 동성간 결혼, 동성간 동거 등 총 네 가지의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생산이 가능하지 않지만,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특히 이성간 동거는 서구에서 결혼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필요한 통계이다. 결혼지위에 대한 질문에서 동거유형을 포함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동거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초혼전 동거, 이혼후 동거, 노년기 사별후 동거 등이 모두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초혼전 동거보다 이혼후 동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Cherlin, 2009).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 사별후 사실혼 관계나 동거관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족 통계는 생산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동거 내 부부관계는 결혼 내 부부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동거관계는 결혼관계보다 해체율이 높고, 평균 지속기간이 짧으며, 출산율이 낮다(Cherlin, 2009; Coontz, 2005, 김승욱, 2009). 따라서 동거율이 높아질 경우 가족구조, 기능, 관계 모든 측

면에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이성관계 파트너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은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이성관계의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이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차이에 대한 학술연구는 무수히 많으며, 이 연구들은 모두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취약성, 자녀양육의 문제, 일가정양립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한부모가족의 다수는 여성가구주가 구이므로 한부모가족과 여성가구주가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부모가족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존재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가 미성년자녀가 아니라 미혼자녀 기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두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통계적 취약집단은 조손가족이다. 조손가족은 부모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부모세대가 손자녀세대를 직접 양육하는 가족형태이다. 형태상으로 보면 두 개의 세대로 구성되어있는 가족이지만, 가족계보상으로는 1세대-3세대만 존재한다. 조손가족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세대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나 빈곤문제, 자녀양육문제, 세대갈등 등의 가족문제가 존재한다. 조손가족은 수적으로 많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아왔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위해서 가족 통계생산이 필요한 집단이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세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통계적 취약집단은 분거가족이다. 분거가족은 교육, 직장 등의 사유로 가족원의 일부가 주거를 분리하여 사는 가족이다. 분거가족은 가족과 가구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생활과 가족문제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가구원 중 누가 분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가족생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성년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분거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분거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가족, 이주노동자 가족, 기러기가족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 분거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거의 범위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구분하는 접근도 필



요하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가족원과 장기간 별거 혹은 일정기간 별거후 주기적으로 동거하는 삶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단위와 가족범주가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분거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의 거주라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비대면적 접촉이나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어 분거가족도 친밀한 가족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통계적 표준집단의 세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통계적 취약 집단은 재혼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간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혼합가족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재혼하면서 전혼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가구 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된다. 특히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친생부모가 서로 다른 가구에서 생활하는 반면, 자신은 부모 중 한 사람(그리고 그 부모의 배우자)하고만 살게 된다. 대부분의 재혼가족에서는 부모의 배우자(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부모자녀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잡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혼합가족은 구조상으로는 표준집단과 다르지 않지만 가족관계상으로는 매우 다른 집단이다.

이 외에도 표준집단으로부터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는 표준집단의 세 가지 특성 외에도 혼인력(marital history), 출산력(birth history)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혼인력에서는 성년이 된 이후 경험한 모든 동거와 결혼 시기 및 파트너십 해체 시기, 남성과 여성의 출생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출산력에서는 임신·출산 시기와 장소, 부성(paternalty), 모성(maternit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이 결합되면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혼합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 제5절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 1. 해외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가족·가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족·가구 통계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가구 현황과 추이를 국제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OECD에서 구축한 Family Database로서, 본 절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구조와 내용을 먼저 검토한다. 학술적으로 표준화된 지표와 프레임워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인구통계와는 달리, 가족·가구 통계의 경우 국가 상황에 따라 상이한 지표가 집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목들 또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수준은 아니며, 단지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별로 비교가능한 수준의 집계항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센서스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검토한다. 국가별 센서스 조사(‘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가구 통계의 작성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로서, 최종 집계항목 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아야만 집계 가능한 항목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OECD 주요 국가들 및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 맥락에 있는 일본과 대만의 센서스 조사를 검토하였다.

### 가. OECD Family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는 2006년 OECD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로 OECD 34개 회원국의 가족관련 자료와 자료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신윤정 외, 2012). OECD 회원국가의 가족관련 지표체계는 2015년 9월 현재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아동정책, 아동성과 4개의 대분류 하에 13개 중분류, 7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 지표의 경우 가족과 아동, 출산, 결혼·파트너십의 내용

3)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15.9.15.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경우 가족·아동과 고용상태에 관련된 내용,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가족·아동정책 지표들의 경우 유자녀 가족 지원정책 개요, 자녀양육관련 휴가, 영유아아동 보육·교육, 가족유형·소득수준별 보육이용 유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아동성과 지표의 경우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과 문해율, 사회참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II-10〉 OECD Family Database 지표

		SF1.1 Family size and composition
	Families	SF1.2 Children in families
	and	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Children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5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1. The structure of families (SF)	Fertility indicators	SF2.1 Fertility rates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teenage births
		SF2.5 Childlessness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SF3.3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SF3.4 Family violence
	2.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LMF1.2 Maternal employment		
LMF1.3 Maternal employment by family status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LMF2.1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LMF2.2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couple families and adults in couple families individually,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LMF2.3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single persons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LMF2.4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LMF2.6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LMF2.7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PF1.2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3 Family cash benefits
		PF1.4 Neutrality of tax/benefits systems
		PF1.5 Child support(maintenance) systems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F1.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F1.9 Aspects of child protection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Child-related leave	PF2.2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by mothers and fathers
		PF2.3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PF2.4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PF2.5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
		PF3.3 Informal child care arrangements
		PF3.4 Childcare support
	Typology of childcare benefits and net parental fees by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PF4.1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4.3 Out-of-school-hours care
4. Child	Child	CO1.1 Infant mortality

outcomes (CO)	health	CO1.2 Life expectancy at birth
		CO1.3 Low birth weight
		CO1.4 Vaccination rates
		CO1.5 Breastfeeding rates
		CO1.6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CO1.7 Overweight and obesity at age 15, by gender
		CO1.8 Regular smokers among 15 year olds, by gender
		CO1.9 Child disability
		Child poverty
	CO2.2 Child poverty	
	CO2.3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Education /literacy	CO3.1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and average years spent informal education
		CO3.2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CO3.3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CO3.4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CO3.5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CO3.6
		Societal participation
	CO4.2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CO4.3 Substance abuse by young people		
CO4.4 Teenage suicides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15.9.15.)

이와 같은 OECD의 자료구조를 확인해 보면, 우선 ‘가족구조’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의 종적차원을 이루는 세대관계는 미성년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가족구조의 횡적차원을 이루는 결혼·파트너쉽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가족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중 ‘출산력’ 지표는 가족의 재생산기능에 연결되는 지표이므로 ‘가족기능’에 해당하는 지표들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들은 ‘가족기능’ 중 경제적 부양 및 돌봄기능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에 따른 돌봄공백현황, 모성고용과 관련된 지표 및 일·가족 시간분배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가족구조’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에 포괄되는 지표 중 일부 지표들은 ‘가족가치’ 차원과 연결된 지표이다. ‘가족구조’ 영역의 ‘출산력’ 지표 중 이상자녀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지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영역의 ‘일·돌봄시간’ 영역의 주관적 웰빙 및 일가족양립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지표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족가치’는 다분히 문화적 맥락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하여 측정하지 않고 있어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가족가치’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한편 ‘가족지원정책’ 영역과 ‘아동성과’ 영역의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가족기능’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적 관련성은 높지 않다.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들은 가족의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에 직접적으로 포괄되기보다는 사회보장 또는 사회정책영역의 지표 프레임워크에서 상세히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성과’ 지표들은 아동에 대한 삶의 질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가구 통계’ 영역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과 초기양육 관련한 돌봄의 측면 이외에는 차세대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복지·웰빙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을 말해준다.

요컨대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항목 중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직결된 차원은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가족가치’ 영역이 중복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의 주기별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측정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가족변화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의 발달과 변화’라는 시간흐름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삶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과 가치규범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 가족은 개인의 의식변화와 사회변동을 매개하기도 하고 각각의 변동을 억지하거나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가족인식 역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가족의 빠른 변화는 개인의 안녕감과 행복감은 물론 적응 및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현재 가족 삶에 대한 평가와 인식, 가족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족규범은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요소이다.

#### 나. 해외의 인구센서스 동향

가족가구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구의 구성과 구조 및 그 변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구센서스의 자료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해외의 인구센서스 자료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가족 및 가구정보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가) 미국 인구센서스(US Census)(2010)

1940년도부터 시작된 미국 인구센서스는 2000년까지 short-form, long-form 등 두 개의 서식으로 묻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수조사, 표본조사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는 10개 문항을 중심으로 인구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문항은 American Community Survey(이하 ‘ACS’)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sup>4)</sup>. 다만 American Community Survey는 매년 조사되는데 반해 한번 조사한 사람은 5년내 에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5)</sup> 2010년 조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US census, History 홈페이지, [https://www.census.gov/history/www/through\\_the\\_decades/index\\_of\\_questions/2010.html](https://www.census.gov/history/www/through_the_decades/index_of_questions/2010.html)

5) US census, History 홈페이지, [https://www.census.gov/history/www/programs/demographic/american\\_community\\_survey.html](https://www.census.gov/history/www/programs/demographic/american_community_survey.html)

우선 조사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house, apartment, mobile home)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who live and sleep here most of the time)이며, 군대, 학업 상의 이유, 시설거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지속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기준일 당시 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외에 교육, 언어, 주거변화, 건강보험과 장애, 군복무, 경제활동, 수입 등을 질문하고 있다. 2010 센서스의 총 문항은 10개로 매우 간략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 첫째, 가구주와 가구원과의 관계이다. 미국 인구센서스의 경우 person 1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person 1은 자기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거나 빌린 사람, 즉 주택의 소유·대여주체를 의미한다<sup>6)</sup>. 이후 가구원들에 대해서 가족관계는 person 1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 가구원과의 관계는 배우자, 생물학적 자녀, 입양 자녀, 의붓 자녀, 형제자매, 부모, 손자녀, 시부모(혹은 장인장모), 사위 또는 며느리, 다른 친족관계, 룸메이트, 세를 살고 있는 사람, 동거인, 기타 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혼인상태는 2010년 인구센서스 설문지에서는 묻고 있지 않고, long-form의 문항이 옮겨간 ACS에서는 상세히 묻고 있다. 15세 이상인 경우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한지, 지난 1년간 혼인지위 변동은 있었는지, 결혼 횟수는 몇 번인지, 마지막 결혼 연도는 언제인지 등을 조사한다. 혼인상태 응답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따로 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기혼으로 체크해야 하며,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미혼으로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받아야 인정되며, 사실혼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다.

셋째, 출생아수에 대해서도 ACS에서만 묻고 있다. 지난 1년간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고, 모든 1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미성년 손자녀를 키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묻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 나) 독일 인구센서스(2014)

6) 설문지에서도 person 1을 ‘a person living here who owns or rents this house, apartment, or mobile home’으로 정의하고 있음



독일의 인구센서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우선 혼인 상태의 경우, 배우자 있음/독신(싱글)/동성 파트너십/미혼부모/사생아 존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결혼관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혼인상태 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경험, 즉 혼인하기 전에 미혼이었는지, 사별 경험이 있는지, 이혼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외국인과의 결혼한 경험이 있는지,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 기간 및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혼인의 다양한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출생과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를 부모별로 세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 여부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자녀수를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정규직 및 파트타임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집계할 때는 맞벌이, 홀벌이, 그리고 둘 모두 노동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만 정규직인지, 둘다 정규직인지, 둘다 파트타임인지, 홀벌이인 경우에는 정규직 및 파트타임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아동보육기관, day care 이용여부, 시간제 계약서비스 이용여부, 육아급여, 출산육아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지원 여부 등 정책과 관련된 항목도 센서스에서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프랑스 인구센서스

프랑스 인구센서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우선 List A에서는 영구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동안 해당 거주지에 사는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휴가, 출장, 입원 등), 신생아(아직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세입자(Subtenants occupying), 룸메이트(roommates part of the housing)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교육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녀,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배우자(그 배우자가 주말, 휴일 등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공부를 위해서 주로 이 집에서 사는 사람, 이 집에 현재 있지만 다른 일상 거주지가 없는 경우, 가사노동자, 고용인 등 이 집에 사는 사람 등도 포함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List B에서는 교육을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성인 자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List C에서는 A, B를 제외한 인원을 조사한다. 여기에는 교육을 이유로 이 거주지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부모가 프랑스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미성년자(minors who live in this accommodation for their education and whose parents live in another town in France)를 비롯하여,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가 다른 쪽 부 또는 모와 살고 있는 경우, 또는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부 또는 모와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간호시설, 요양원에 한 달 이상 머무는 사람인 경우, 센서스 조사 당시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주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법적인 결혼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법적인 결혼상태는 미혼, 결혼(별거 포함), 사별, 이혼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성별, 생년월일, 국적, 5년 전 거주지, 학위 취득 여부, 경제활동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라) 이탈리아 인구센서스

이탈리아 인구센서스에서 ‘가구 정보(household form)’를 작성하는 사람은 ‘가구주’(head of household)이다. 가구주란 자신의 이름으로 공공기록관 리소(Public Records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가구주에 대한 규정을 공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이 사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구성원이나 센서스 조사 당시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구(household)는 결혼, 친족, 친밀, 입양, 법적 후견인, 또는 개인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들이 동거 또는 거주지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인구센서스는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별가구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list A, list B가 존재한다. list A의 경우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미혼자녀(연령순), 기혼자녀와 그들의 가족, 그 외 다른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주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하며 조사한다. list B의 경우는 관광, 짧은 방학, 단기 치료 등으로 현재 이 거주지에 살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관계의 경우, 가구주를 중심으로 묻고 있다. 그 분류는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동거인,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자녀, 가구주만의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만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동거인), 가구주의 부모(또는 부모의 배우자/파트너), 가구주의 장인/장모(사아버지/시아머니), 가구주의 형제/자매,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구주/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파트너), 가구주 그리고(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사위/며느리, 손자녀, 조카, 조부모, 그 밖의 친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통해 이탈리아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와 친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의 경우 독신, 결혼, 사실상 별거, 법률상 별거, 이혼, 미망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의 결혼상태 뿐 아니라 최근의 결혼경험 전 결혼상태에 대해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결혼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시민권, 현재와 과거의 거주지, 교육수준, 업무상의 지위, 학교 또는 작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다.

## 2)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가) 영국 인구센서스(England Census)(2011)

영국 인구센서스의 조사대상은 해당 가구에 주로 사는 사람이다. 여기서 주로 사는 사람이란 영국의 일정 주소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살려는 사람의 경우 모두 응답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조사 당일에 하룻밤을 보내는 방문인의 경우 방문인까지 응답지에 응답토록 함으로써 현재 머물고 있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방문인의

경우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로 구성된 약식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학업으로 일정기간 떨어져 사는 사람, 여러 사정으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 등 함께 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한 조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householder)는 주거지를 소유하거나 빌린 사람, 그리고(혹은) 집세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가구원과의 관계를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은 상세히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 구성을 살펴보면, 결혼한 적 없음 또는 동성결혼 한적 없음을 비롯하여 결혼했음, 동성결혼에 등록되어 있음, 법적 결혼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별거하고 있음, 법적 동성결혼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별거하고 있음, 이혼함,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등록해지함, 사별, 동성결혼 상태에서 배우자 사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 결혼경험이나 출생아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묻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많은 문항을 할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 나) 캐나다 인구센서스

캐나다의 인구센서스도 미국과 유사하게 짧은 형태(short form)와 긴 형태(long form)으로 구성되어 있다. 짧은 형태의 질문지는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긴 조사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수행하고 있다. 짧은 조사지는 성별, 태어난 해, 결혼 상태, 사실혼관계, person 1과의 관계,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 능력,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집에서 처음 배운 언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해당 가구가 주 거주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룸메이트,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의 경우가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children in joint custody)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부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만약 동일하다면 조사 당시 머물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배우자나 파트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SPOUSES OR COMMON-LAW PARTNERS TEMPORARILY AWAY who stay elsewhere while working or studying should be listed at the main residence of their family, if they return periodically).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의 경우, person 1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erson 2의 경우 person 1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성 법률혼 배우자, 이성 사실혼 파트너, 동성 법률혼 배우자, 동성 사실혼 파트너, 아들/딸, 손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person 3 이후부터는 person 2와의 응답지가 다른데, 이들은 person 1과 2의 자녀, person 1만의 자녀, person 2만의 자녀, person 1의 손자녀, person 1의 손자녀, person 1의 사위/며느리, person 1의 부모, person 1의 시부모/장인장모, person 1의 형제자매, 위탁아동, 룸메이트 또는 하숙인, 기타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의 경우, 법적으로 결혼한 적 없음, 법적으로 결혼하고 현재 동거 중, 법적으로 결혼하고 현재 별거 중, 이혼, 사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common-law)에 관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법률혼 조차도 매우 다양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성혼이나 법률혼 이외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긴 설문지에서는 일상 생활, 사회문화적 정보, 이동성, 부모의 출생지, 교육, 경제 활동, 소득 등에 대해 묻고 있다.

#### 다) 호주 인구센서스

호주 인구센서스의 조사대상은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른, 아동, 신생아, 그리고 방문자도 포함함. 또한 ‘내일’ 해당 거주지로 돌아 올 사람에 관해서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 당시 부재한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

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주로’의 의미는 1년 중 6개월 이상 해당 거주지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구성을 person 1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erson1의 경우 가구주<sup>7)</sup>를 의미하며, 가구주가 부재한 경우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구성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person1에 대한 다른 관계(사위, 손자녀, 삼촌 등)를 묻고 있어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은 기본적으로 커플관계로 부터 (한)부모-자식 관계, 자녀부양 및 다른 혈연관계(손자녀 구성 가구 또는 재혼 가구 등)로 구분한다. 혼합가족(family blending)은 커플(부부) 가족(couple families) 분류 가운데 부모-자녀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구분하고, 특히 가구구성원에게 그들 커플(부부)의 자식인지, 다른 한쪽의 자식인지를 묻고 있어 이를 통해 가족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뉴질랜드 인구센서스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의 조사대상은 센서스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거주 조사(dwelling form), 개인 조사(individual form)가 이루어진다. 거주 조사의 경우 person 1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 조사는 현재 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다. 또한 거주 조사에서 이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 조사에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정보(성별, person 1과의 관계, 센서스 조사 당시 뉴질랜드에 있었는지 여부, 떨어져 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을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거주 조사의 경우 그 가구에 사는 사람 중 한 사람만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주로 그 가구에 사는 성인’으로 권장하고 있다. 가구구성과 관련해서는 거주 조사에서는 가구구성원과의 관계

7) 가구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홈페이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를 person 1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다른 가구구성원의 경우, person 1과의 관계가 부인/남편/파트너/사실상 혼인관계, 동성 파트너/동성간의 사실상 혼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룸메이트(flatmate),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조사에 있어서도 현재 함께 사는 가구구성원 모두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가구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묻고 있다. 예컨대 가구원들의 관계를 법적 혼인, 등록된 civil union, 동성 civil union, 이성 동거, 동성 동거, 부모, 아들/딸, 형제/자매, 룸메이트, 기타(조부모, 시부모, 파트너의 부모 등)로 질문하여 분류한다.

혼인상태는 개인 조사에서 묻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한 법적인 결혼 또는 civil union에 등록한 적 없음, 이혼 또는 civil union 해제, 배우자 또는 civil union의 죽음, 별거(permanently seperated), 법적으로 결혼 상태, 법적으로 civil union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출산경험은 15세 이상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묻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거부항목(object to answering this question)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에 직업, 소득, 교육수준, 일하는 장소, 직업이 없는 경우 직업 구직 의사 등에 관한 경제 관련 내용을 묻고 있다.

### 3) 일본, 대만

#### 가) 대만 인구센서스(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대만 인구센서스는 크게 주택상태(housing status), 가구상태(household status), 그리고 인구상태(population status)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상태의 경우이 집의 용도, 방 또는 화장실의 개수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상태는 거주지 소유 형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상태와 관련해서는 이름 및 성별, 태어난 날, 국적, 결혼 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언어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및 주거상태의 경우는 첫 번째 가구원, 혹은 가구원 중 한사람에게만 응답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인구상태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지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여부는 미혼, 결혼 또는 동거, 이혼 또는 별거, 사별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묻고 있지만 가구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설문 중간에 ‘주가족부양자인지 여부’에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구구성원 중 한 사람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족부양자가 가구주일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와 관련한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배우자(동거), (수양)부모, 배우자의 (수양)부모, 조부모, (수양)자녀, (수양)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또는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그들의 배우자, 기타 혈연관계, 고용인, 기타 비혈연관계 등으로 나열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문항이 ‘또는’(or)으로 결합되어 있어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수 및 사는 곳과 관련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있는지 여부, 자녀수, 그리고 사는 곳을 묻고 있다.

#### 나) 일본 인구센서스

일본 센서스의 경우 평소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함께”의 기준은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질문문항으로는 가구구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응답한다. 응답 문항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세대주의 부모,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 외 친족, 세입자, 기타로 구성된다. 둘째, 혼인 여부는 배우자의 유무로 묻고 있다. 문항은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별거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출생년도, 교육 수준, 경제활동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역시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구센서스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조사와 유사한 장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센서스는 각 국가의 고유한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서구의 경우 파트너십에 관한 조사 문항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으며,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보다 일찍 개인화되고 혼인관계의 유동성이 보편화되어 왔고, 그 결과 계부모가족의 비중이 높다는 가족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점차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본다면 이러한 센서스 문항의 구성과 정보생산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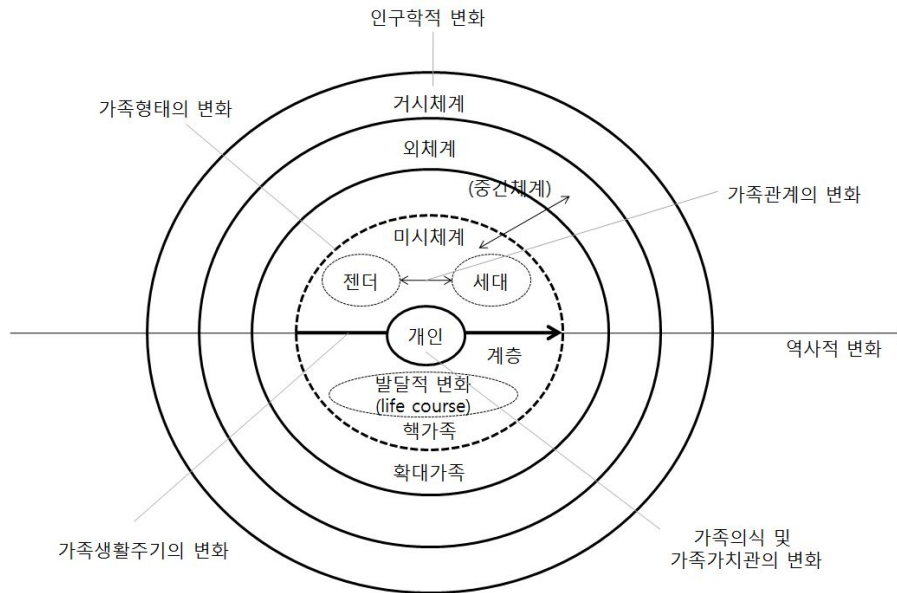
또한 거주인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가구원들의 고용상황 및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생산하기도 하는 등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조사문항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형태와 관계를 규정짓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가구대표자의 의미보다는 경제적으로 분명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구대표자로 선정하는 경향이 보다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었다.

## 2.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자료와 한국의 가족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통계 프레임워크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구성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현실태와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족에 대한 현상에 대해 비교문화적인 준거틀로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 모든 조합의 가족 통계지표를 생산하는 대신 효용도가 높은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프레임워크를 간명하게 구성한다. 넷째, 통계의 효용도는 정책적 활용도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프레임워크 구성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최연실(2015)이 생태학적 체계 관점에서 제안한 ‘한국 가족변화의 맥락’의 요소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II-4> 참조).

〈그림 II-4〉 한국 가족변화의 맥락



출처: 최연실(2015)

먼저 미시체계로서의 핵가족은 세대와 젠더로 구성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적으로 변화하는데, 이 때 핵가족은 계층이라는 사회경제적 위치의 영향을 받는다. 핵가족은 원가족구성원들(성인자녀 기준으로 보면 노부모와 결혼한 형제자매 및 그 가족)로 구성된 확대가족 안에 포함되며, 확대가족의 도구적·정서적 영향력 범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은 다시 다양한 외체계 및 거시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인구학적 변화와 역사적 변화의 맥락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구조(형태), 기능, 발달, 의식 및 가치관의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최연실(2015)은 가족의 기능을 분석의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은 반면, 관계를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정시간동안 반복되어 유형화된 관계의 형식과 그 관계망을 가족구

조로 정의하고 있어 가족관계를 별도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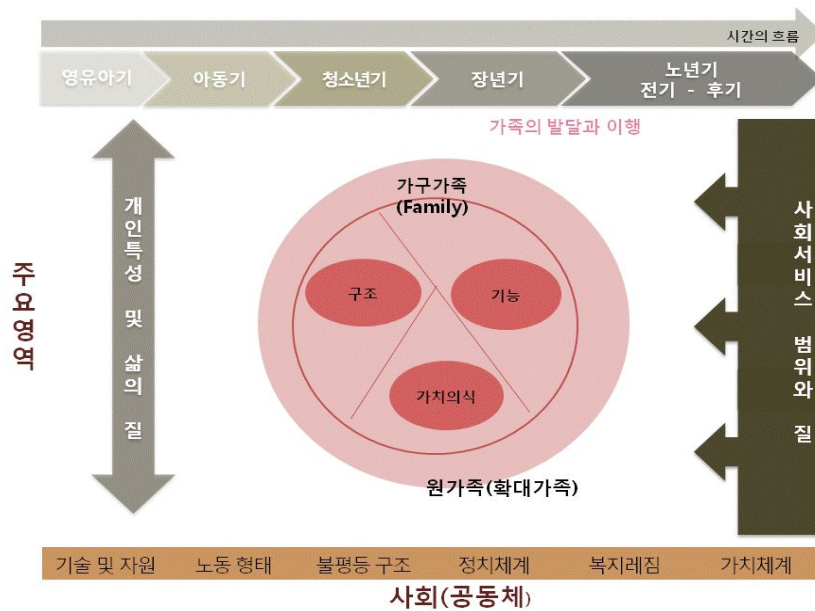
그러나 가족을 효과적으로 포착해내기 위해 가족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찰단위로서의 가족은 ‘혈연이나 다양한 방식(법적 또는 사실적)으로의 결혼과 입양, 계부모 관계 또는 대리양육을 통해 관계를 맺고 통상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면, 그 중 한 사람은 적어도 성인의 사람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초는 부부관계, 한부모와 자녀관계 내지는 다른 혈연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어떤 가구는 한 가족 이상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 삶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삶을 구조, 기능, 가치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구조, 기능, 가치관은 각각 개인 및 가족주기의 시간흐름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전기-후기)의 단계로 이행하면서 변화한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회적 사건이나 급속한 사회변동에 의해 가족의 이러한 발달이나 변형된 구조로의 이행 혹은 해체라는 변화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려될 뿐 일반적으로는 시간흐름의 차원으로 가족의 발달과 변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먼저 가족구조는 가족원간에 일정 시간동안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형화된 가족관계의 형식과 관계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이 단위로서 혹은 가족원들이 상호 사회체계와 가족관계틀 내의 위치나 지위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의 내용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기능을 개념화할 수 있다. 요컨대 가족구조가 가족관계망의 형식이라면 가족기능은 그러한 형식에 의한 상호작용의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가족행동이나 행동과 연관된 일련의 선택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입되는 특정한 이념과 가치지향으로서의 가족가치 및 의식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간의 흐름이나 외부적 사건에 의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는 가족발달 및 변화의 측면이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구조: 유형화된 가족관계망이나 관계들(가족형태와 관계구조)
- 가족기능: 가족구성원이나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 내용과 결과
- 가족가치 및 의식: 가족과 가족원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주요한 가치기준 및 행위규범
- 가족의 발달과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및 가족변화(시간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형과 해체로부터 외부적 사건(재난 등)이나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변화)

또한 가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기술 및 자원, 노동형태, 불평등구조, 정치체계, 복지체계, 가치체계의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가족·가구 통계의 프레임워크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통계는 가구단위에서 생산되며, 가족가치

관에 대한 통계는 개인단위에서 생산된다. 각각의 영역에는 다시 각 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이를 뒷받침할 통계자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에는 가족의 삶을 포착해낼 수 있는 3개의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는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영역의 지표와 그 지표 생산과 연관된 부차적인 준거적 통계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통계 프레임워크 구성의 세 번째 원칙에 따라 중영역과 그러한 지표를 뒷받침하는 준거적 통계자료는 생산가능한 조합을 다 나열하기 보다는 효율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내에 조부모, 부모, 자녀세대 외에 다른 친인척이나 비혈연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효율성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 필요도가 낮기 때문에 세대구성 통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가. 가족구조

가족구조 영역을 핵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영역의 중심 축은 파트너십의 유형과 세대관계 구성이다. 먼저 가족구조 영역의 첫 번째 중영역은 부부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의 1차 준거에서는 법률혼인지, 동거(사실혼 포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소되어 한부모인지를 구분한다. 동거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3개월 이상 공유한 경우만 포함한다. 파트너십의 2차 준거에서는 1차 기준에 따라 구분된 통계의 추가 분석을 위해 법률혼의 경우 초혼/재혼 여부를, 한부모가족에서는 한부모의 성별과 한부모가 된 사유(사별, 이혼, 기타)를 구분한다. 동거가족에서는 2차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3차 준거에서는 2차 준거에서 생산된 가족 통계의 추가 분석을 위해 배우자 각각의 출신 국가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 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이 구분될 수 있다.

두 번째 중영역은 세대구성이다. 세대구성의 1차 유형에서는 1인가구, 부부가구, 2세대 가족(부모+미성년자녀), 3세대가족, 조손가족, 기타가구가 구분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1차 유형에서 기타 혈연관계의 친인척

이나 다른 구성원이 존재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3세대가족이 조부모, 부모, 자녀 외에 부모의 미혼형제를 포함하고 있어도 이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3세대가족에 포함한다. 1인가구의 2차 준거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만 추가적으로 구분된다. 1세대 부부가족에서는 2차적으로 법률혼 여부(혹은 동거 여부)가 구분된다. 2세대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적으로 법률혼 여부(혹은 동거 여부)가 구분된다. 3세대가족과 조손가족에서는 2차적으로 조부모가 부계친인지 모계친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분된다. 세대구성에서 3차 준거는 출신국가, 친생관계, 주거 분리 여부이다.

〈표 II-11〉 가족구조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중 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3차 준거	측정변수 /추가 필요변수
파트 너십	법률혼	초혼/재혼	출신국가	혼인신고 여부 초혼/재혼 여부(신설) 남녀모두 국적과 출신국적
	동거		출신국가	동거 여부(3개월+)
	이혼·별거	초혼/재혼 여부		이혼관련문항 신설검토
	한부모	남성/여성 사별/이혼/ 기타	출신국가	한부모사유 미성년자녀유무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3차 준거	측정변수 /추가 필요변수
세대 구성	1인가구	남성/여성	출신국가	결혼지위여부
	1세대가족	법률혼/동거	출신국가 주거분리 여부	혼인신고 여부
	2세대가족	법률혼/동거	출신국가 부/모자녀의 친생관계 주거분리 여부	혼인신고 여부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수/자녀연령
	3세대가족	부계/모계	출신국가 주거분리 여부	1세대 부모 수 혼인신고 여부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수, 자녀연령
	조손가족	부계/모계	출신국가	1세대 부모수 손자녀수
	기타유형			
가구 규모	가구크기			가구원 수

## 나. 가족기능

가족기능 통계 역시 가족단위에서 관찰되는 통계이며, 중영역은 경제적 부양, 임신·출산, 돌봄, 정서적 지지이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원가족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부양의 1차 준거는 가족 내 부양자수(홀벌이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원가족부양 여부이다. 부양자 수의 2차 준거는 부부소득 비율이며, 원가족부양의 2차 준거는 부양대상이 부계인지 모계인지와 소득부양액이다. 가족의 재생산기능의 일차적 준거는 임신·출산에 의한 출산력(자녀수)이고 2차 준거는 자녀성별과 연령(터울)이다. 돌봄의 1차 준거는 돌봄대상에 따라 미취학아동(만0~5세) 돌봄 여부, 학령기아동(만6~15세) 돌봄 여부, 노부모 돌봄 여부, 그 외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원 돌봄 여부, 가사노동수행 여부이다. 아동돌봄의 2차 준거는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와 돌봄/교육기관이용 여부이다. 노부모 돌봄 여부와 그 외 돌

봄 여부, 가사노동 수행 여부의 2차 준거는 주 수발자 또는 주 수행자가 누구인지이다. 정서적 지지의 1차적 준거는 가족 전체 차원의 유대감 및 관계의 질이다. 유대감과 관계의 질 2차적 준거는 각각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원가족관계에 대한 유대감과 관계의 질이다.

〈표 11-12〉 가족기능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경제적 부양	부양자수(홀벌이/맞벌이)	부부소득비율	가구내 소득자수 가구주와 가구소득자와의 관계
	소득수준		가구소득자의 소득수준
	원가족 부양	부계/모계 소득부양액	부모부양비용
재생산	출산력	자녀수와 성별 자녀 연령(터울)	16세 이상 여성의 자녀출산경험유무, 출산자녀수와 성별, 출산터울
	추가 출산계획	-	추가 출산계획
돌봄	미취학아동 돌봄(만0~5세) 여부	주 돌봄자 돌봄기관	연령별 주돌봄자와 돌봄기관 주돌봄자와 아동과의 관계 주돌봄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형태
	학령기아동 돌봄(만6~15세) 여부	주 돌봄자 교육기관	연령별 돌봄기관과 돌봄시간 주돌봄자와 아동과의 관계 주돌봄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형태
	노부모 돌봄 여부	주 수발자	노부모의 신체상태와 수발자, 주수발자와 노인의 관계 주수발자의 취업유무 및 근로형태
	그외 돌봄(부모의 장애/질병 가족원) 여부	주 수발자	가족내 장애 및 질병가족원 유무와 주수발자, 장애 및 질병가족원과 주수발자 관계
	가사노동 수행	주 수행자	가사노동의 영역별 주수행자 주수행자의 취업유무 및 근로형태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정서적 지지와 방임	유대감(결속)	의사소통 · 신뢰	- 부부관계 - 부모자녀관계 - 형제관계 - 원가족관계	하루 평소 대화시간 및 신뢰도
	관계의 질	관계만족도	- 부부관계 - 부모자녀관계 - 형제관계 - 원가족관계	가족 및 가족관계별 만족도
	방임과 학대	가정폭력	- 관계유형별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경험율

#### 다.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에 대한 통계는 개인단위에서 생산되며, 중영역은 파트너십, 임신·출산, 돌봄책임, 성역할태도 및 가족주의 이념이다. 파트너십의 1차 준거는 결혼 필요성, 동거, 재혼, 이혼에 대한 허용성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1차 준거는 자녀 필요성, 희망 자녀수, 성 선호이다. 돌봄책임의 1차 준거는 영아돌봄, 유아돌봄, 노부모 돌봄, 그 외 돌봄의 책임 소재이다. 마지막으로 성역할태도 및 가족주의 가치관의 1차 준거는 가사분담, 맞벌이에 대한 동의 정도와 직계가족 이념에 대한 동의 정도이다. 가족가치관은 개인단위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2차 준거와 3차 준거는 설정하지 않았다.

〈표 II-13〉 가족가치관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영역	1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파트너십	결혼 필요성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동거 허용성	동거허용에 대한 태도
	재혼 허용성	재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혼 허용성	이혼 허용에 대한 태도

영역	1차 준거	측정변수/추가 필요변수
재생산	자녀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과 그 이유
	희망 자녀수	희망하는 자녀수
	성선호	희망하는 자녀성별
돌봄책임/범위	영아돌봄책임	자녀돌봄 주책임자에 대한 견해
	유아돌봄책임	상동
	노부모 부양 책임	노부모 주부양자에 대한 견해
	기타 돌봄책임	장애, 질병자에 대한 주돌봄자
성역할태도 및 가족주의	가사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가사분담방식 및 내용에 대한 인식
	맞벌이	맞벌이에 대한 태도
	여성성/남성성	여성적, 남성적 기질에 대한 동의
	직계가족 이념	가족중심성,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태도

#### 라. 가족의 발달과 변화

가족과 가구들은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그들이 처한 생애주기나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미혼의 개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부가족에서 유자녀가족으로, 혹은 반드시 개인의 생애주기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부모 가족이나 기타 유형의 가족으로 분류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녀를 가진 가족은 일인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으로, 학교를 다니는 부양 자녀를 가진 가족일 수도 있으며, 성인 자녀를 가진 노인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체로 통상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그러한 특정유형의 가족으로 분류되는데, 가족은 그 구성원들의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가족도 함께 세월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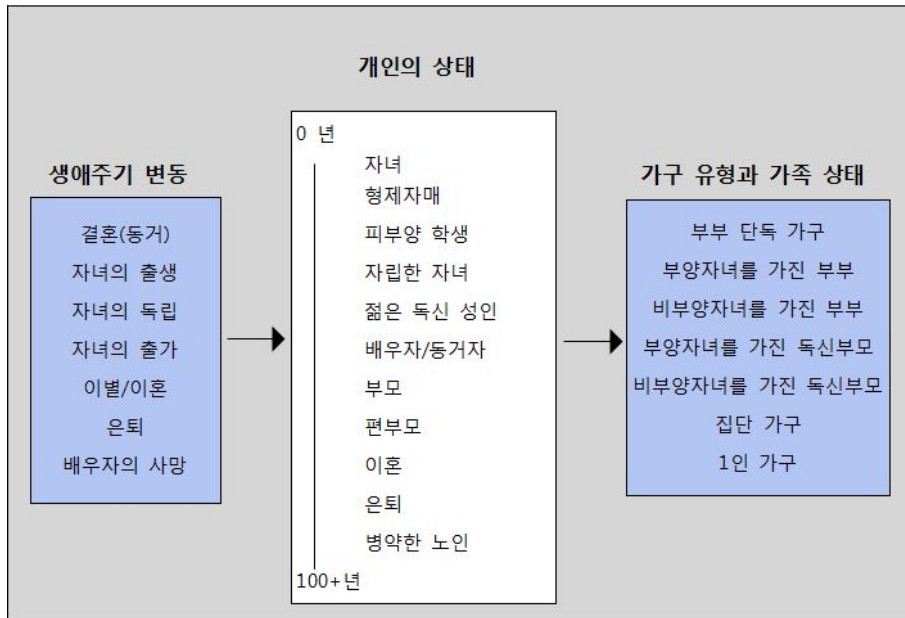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 양육하지만, 그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 집을 떠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들 역시 배우자를 만나고, 그 동안 그들의 늙은 부모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은 출생과 사망, 결혼 또는 동거, 자녀의 독립, 부부의 이별 등의 개인 생애변화에 따른

유형적 변화를 보여준다.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의 수와 유형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이러한 변화 자체가 가족의 웰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출생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의 취업을 통한 독립은 가족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족구성원의 사망과 같은 다른 종류의 변화는 가족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긴장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가족 레질리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연령과 재혼 같은 결혼(법률혼과 사실혼) 등의 가족형성에 관한 자료들과 출산율과 자녀출산시 연령, 자녀수 등을 비롯한 출산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가족해체에 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자료들에는 부부의 이별과 이혼, 자녀들의 독립, 사망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생애주기상의 변화, 특히 관계의 형성과 해체와 관련된 변화들은 어떤 연령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재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평생 몇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할지도 모르며, 그 가운데 일부 또는 모든 관계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단계에서 사람들은 독신이었다가 부부 또는 동거인으로, 부모로, 편부모로, 다시 동거인으로, 이혼자 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상태와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를 아직 가지지 않고 있고 이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있는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와 기능에 있어서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 은퇴한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2차원적인 조사상황에서는 포착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변화가 야기되는 계기들을 고려하여 구성의 횡수와 기능유무 등을 간접적으로 가족의 발달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발달과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Trewin, 2001).

〈그림 II-6〉 개인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발달과 변화



### 제3장

## 가족가구 통계 작성현황 분석

### 제1절 영역통계 작성현황

#### 1. 사회통계 현황과 가족 통계

2015년 5월 4일 기준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총 934종이며, 이 가운데 605종을 국가승인 사회통계로 선정, 분류되었다. 아래의 표 <III-3>은 사회통계를 영역과 지역단위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사회통계로 확정된 것은 572종이며, 사회통계 여부 불분명하여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통계는 33종이다. 이러한 통계를 작성형태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조사통계의 지역별 분류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5).



76 가족가구영역 통계 <sup>영역</sup> <sup>프레임워크</sup> 작성

전체

전국

광역시

중합

계

	건강 중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현황 소득소비 중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인구 중 단양군 귀농귀촌조사				은 종합영역과 중복됨 통			
	소계	조사	보고	가공	소계	조사	보고	가공	소계	조사	보고	가공	소계	조사	보고	가공
	358	113	245	0	19	17	2	0	34	17	17	0	305	79	226	0
	(354)	(110)	(245)	0	(16)	(15)	(1)	0					(304)	(78)	(226)	0
	605	239	345	21	239	134	84	21	57	22	35	0	309	83	226	0
(%)	100	39.5	57.0	3.5	39.5	56.1	35.1	8.8	9.4	38.6	61.4	0.0	51.1	26.9	73.1	20.0

\* 2 ( , ) 1 ( ) 1 ( ) ( , 2015).

이 가운데 가족관련 통계는 조사통계 8종, 보고통계 3종으로 총 11종이며, 모두 전국단위에서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련 통계조사 및 보고 통계명과 작성기관, 측정단위 등의 특성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영역별 사회통계 현황

주영역 (부영역)	통계명	작성 연도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지역 수준	모집단 분류	모집단 기준
가족 (건강)	전국출산력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82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사	3년	전국	가구	만15-59세 기혼여성
가족	보육실태조사	2004	보건복지부	조사	3년	전국	시설, 가구	
가족	가족실태조사	2005	여성가족부	조사	5년	전국	가구	만12세 이상
가족 (노동)	기업및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2006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기관, 기업 체	X
가족 (노동)	여성가족 패널조사	2007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조사	2년	전국	여성( 가구)	만19세 이상-65 세 미만
가족 (안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개인	19세 이상
가족	한부모가족실태 조사	2012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가구	
가족 (인구)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2014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가구( 다문 화)	X
가족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1994	보건복지부	보고	반기	전국	아동	
가족	가정위탁국내 입양소년소녀 가정현황	1994	보건복지부	보고	반기	전국		
가족 (안전)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2006	보건복지부	보고	1년	전국	아동	



## 2. 가족조사 통계

본 절에는 행정통계나 조사단위가 기관인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가구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조사통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에서 승인하고 있는 가족관련 조사통계들은 각기 고유한 목적과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자료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름대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족관련 조사들 역시 개인 및 가구에 기반하여 가족생활 및 유형, 관계 등을 부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맞춰 배치하고, 각 조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가족영역으로 분류된 11종 이외에도 가족구조 및 기능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보육실태조사와 생활시간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추가하였다.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에 맞춰 각 조사를 재배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3〉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따른 영역별 주요조사통계

영역		주요조사	
가족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주택총조사</li> </ul>	
가족기능	경제적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인구조사</li> </ul>	
	임신·출산 및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시간조사</li> <li>보육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실태조사</li> </ul>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실태조사</li> </ul>	
가족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조사</li> </ul>	
가족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패널조사</li> </ul>	
취약집단 또는 특수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실태조사</li> <li>다문화가족실태조사</li> </ul>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를 통해 각 가족관련 조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가.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의 유형과 구조를 통해 한국 가족의 형태와 가족관계망의 틀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주요한 국가통계자료이다. 가족·가구 통계에서 ‘가족구조’ 영역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하는 조사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조사의 기본 표본틀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는 조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는 1925년부터 시작되어 매 5년마다 진행되었으며, 주택에 관한 조사가 포함된 것은 1960년 9회부터이다. 2010년까지는 전수조사와 일부 집단에 대한 부가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행정 통계에 기반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고, 부가조사의 집단을 확대하여 일부 인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잠시 집을 떠난 사람, 공익근무요원이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직업군인, 입주 도우미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대, 학업, 직장, 시설거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주기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조사하되,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준해 가구의 유형과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구조와 유형이다.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가족관계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질문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파악한다. 범주로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 자녀와 그 배우자, 증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과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의 14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계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손자녀와 그 배우자를 친손자녀 및 그 배우자와 외손자녀 및 그배우자로 구분함으로써 15

8) 통계청 ‘나라통계’ 사이트. <http://meta.narastat.kr/> 참조.

개 범주로 구성하는 변화가 발견된다.

둘째, 전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으며,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 연령만 질문한다. 그러나 2015년 표본조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되는데, 법률혼을 배우자와 법률적인 혼인상태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신 동거와 별거를 추가한 6개범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표본조사는 총 출생아수 파악을 위해 기혼인 경우에만 조사하고 지침에서만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6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출산한 자녀유무와 자녀수, 성별을 파악함은 물론 출산자녀 가운데 사망한 자녀수와 성별까지 추가 질문하고 있다. 나아가 첫출산과 마지막출산 자녀의 출생일과 추가자녀출산계획까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인구 및 가구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가족조사’로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이 조사가 노동영역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추출은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집계는 가구원을 단위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것처럼 가족기능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경제적 부양 기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 특징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월단위로 공표되는 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율 등의 주요한 고용지표가 공표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및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27,011개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3만 2천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조사대상가구내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본 조사에서는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과 8월에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8월에는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창업자금의 규모 등을 조사한다. 5월에는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구직 및 취업경험, 장래 근로에 대한희망 등을,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종학교 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다.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1999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조사되어 지금까지 총 4회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약 27,000명(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이 2일씩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가 제공하는 주요한 조사내용은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일지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을 조사하여, 「함께한 사람」 및 「행위장소/이동수단」 종류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간일지 작성 관련한 날과 관련하여 작성한 날의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건강상태, 근무 또는 등교여부 등의 변수를 함께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실제 출생연월, 혼인상태, 주택종류 및 점유형태, 가구소득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2014년부터 10세미만 자녀정보 및 분거가족 관련사항 포함하여 가구원정보가 상세화되었다. 그 외에도 시간부족인식, 피곤함 인식, 주관적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성역할 인식 등의 주관적 인식과, 경제활동, 교육정도, 개인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한다(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개요 참고)

#### 라. 보육실태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정책의 확대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09년을 시작으로 총 3회 실시되었다(2015 조사는 현재 조사중이다). 보육실태조사는 크게 가구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300개 조사구로 가구조사의 경우 조사구당 약 65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동보육 수요율을 약 16.7%(2009년 평균)로 추산할 경우 총 2500가구를 조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시설조사는 시설유형별, 지역별, 정원규모별 비례 배분하여 4천개 어린이집 선정하여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부문 조사의 경우 우선 가구원 특성, 아동 부모, 자녀 양육, 보육·교육 정책, 자녀의 보육·교육이용, 다문화 가정,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해서는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개요, 미취학 아동·하루 중 시간단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등, 기관별 이용실태, 비공식 서비스이용실태, 과거 이용경험, 향후 이용욕구, 육아관련 의견 등을 조사한다. 시설부문은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운영, 보육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평가 및 관리, 보육교사 면접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마. 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전국의 가족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자료로 현재 3차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표본가구의 만 12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의 표본규모는 전국 5,018가구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0~2013년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가족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가족구성 및 돌봄,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 가족여가 및 참여,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종합적인 가족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 가족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 사 내 용
가구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구성원 명부(함께 또는 따로 사는 가족구성원 파악)</li> <li>· 가족 돌봄(영유아, 초등학생, 간병 필요자) 유무 및 세부내용</li> <li>·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계 특성</li> </ul>
만12세 이상 가구원 (가구대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li> <l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li> <li>·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li> <li>· 일과 돌봄, 가족여가 및 참여</li> <li>·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li> </ul>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가구내 혈연이나 혼인·입양 등의 관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로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가구내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혈연·입양에 의한 미혼 자녀에 한하여 포함한다. 비동거가족은 학업을 위해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취직, 전근, 파견, 출장 등으로 장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 보육원, 양로원, 특수병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비동거가족으로 분류한다.

#### 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족부양 변화양상 파악 및 관련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82년 최초로 실시되어 3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에 초점을 둔 유사 조사인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통합되어 조사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16,000여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5~5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

요 조사항목은 가구조사는 가구원 사항,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인조사는 임신 및 출산, 피임, 모자보건, 가족복지, 가족 가치관 등을, 미혼자조사는 학력, 직업, 결혼관 등을 조사한다.

#### 사.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정폭력정책의 정책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 4차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전국 5,000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개인단위로 조사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성역할 및 폭력행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원과의 관계, 그 외 일반적 사항 등이다.

#### 아. 사회조사의 '가족'부문

사회조사는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가족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사이다. 1977년 최초로 시작된 조사로,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조사이다(통계청, 2014 사회조사 지침서).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부문은 1991년을 시작으로 3~4년주기로 실시, 2006년 이후 2년 주기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9번 조사 실시되었다(1991, 1994,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2014) (정기선·김혜영, 2013). 조사대상은 17,664 표본 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통계청, 2014 사회조사 지침서)이다.

주요 대상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심으로 21개 문항만을 핵심적으로 묻고 있다. (노)부모와 관련해서는 생존여부, 생활비 주제공자, 부모와 동거자,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의 교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 중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다. 가족구성과 관련해서는 결혼문화에 대

한 태도, 결혼식문화에 대한 인식, 결혼·이혼·재혼·입양에 대한 견해,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다.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 실태를,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자녀, 자기 부모,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전반적 가족관계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청소년들의 경우 고민하는 문제, 고민상담 대상을, 분거가족에 대해서는 분거가족 여부, 분거 이유 및 기간을 조사한다.

#### 자. 여성가족패널조사<sup>9)</sup>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과정과 사건(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조사이다. 2006년 첫 연구를 시작하여, 2007년 1차 웨이브 조사, 2008년 2차 웨이브 조사, 2010년 3차 웨이브 조사,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 2014년 5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규모는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제1차 본조사 가구 및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추적조사하며, 2014년 5차 웨이브 조사는 분가가구를 포함하여 9,592가구에 12,285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 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가구용과 개인용에서 다루고 있다. 가구용은 가구원 및 가족,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개인용 중 가족관련 영역은 일반 사항을 포함하여 2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9)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박사의 자문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표 III-5〉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가족 관련 조사 항목

구분	가족구성 및 쟁점 문항
가구	가구원 동거여부, 가족구성의 변화(새롭게 동거하게 된 가구원, 동거사유 등), 일시적 비동거 및 사유,
개인용	결혼과 부부생활(혼인변화, 결혼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의사결정, 함께하는 활동, 갈등), 가사노동, 별거(자녀돌봄, 양육비 등), 이혼(자녀 양육권, 미성년자녀 동거, 양육비 등),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자녀(미취학, 초중고, 성인)와의 관계, 본인 및 남편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본인 및 남편 부모와의 관계, 여성건강
일자리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등

여성가족패널의 가족형태 분류는 설문지를 통해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가구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며, 가구와 관련된 질문에 가장 잘 응답해 줄 수 있는 가구원이 응답한다. 가족형태를 구분하기 활용되는 방법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의 가구주 정의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가구주의 정의와 동일하지만, “사전에 이런 엄격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지목하는 가구원(응답자 본인 포함)을 가구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평소에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인척이 모두 가구원에 포함된다.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은 제외된다. 배우자는 동거, 사실혼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 가족도 포함한다. 단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 분가한 기혼자녀, 같이 살고 있는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동거가구원과 비동거가구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형태를 모두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가족형태 구분도 가구단위의 동거가구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가족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패널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가구변화로 인한 가족형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차.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필요성 확대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2012년을 시작으로 현재 2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모자기타가족, 부자가족, 부자기타가족) 가구주 2,500명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가구유형별 층화추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아이 돌봄,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실태,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정책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 카.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2009년 처음 시작되었고, 매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단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 귀화자)와 그 배우자 및 만9~24세 자녀이며, 표본규모는 26,098가구이다. 표본추출은 3,470개 행정 동읍면을 1단계로 하여, 추출된 850개 동읍면에 한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결과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대상자 명부를 구축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항목은 국적, 성별, 한국입국 관련 등 일반사항, 배우자의 취업 및 직업, 모국에서의 직업, 현재 취업여부 및 직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

활, 복지욕구 등이다.

### 3.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 통계현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가구 통계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 프레임워크’가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비교 지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OECD Family Database이다. 그러나 OECD 가족 통계 지표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어, OECD 국가들과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를 구축을 시도한 신윤정의(2012)에 따르면, 총 163개의 지표 중 96개의 자료에서 한국자료가 아예 누락되어 있으며, 그중 71개는 현재의 자료를 재구성, 집계할 필요가 있고, 26개는 새로운 조사항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지표들 중에서 대분류 3,4의 경우 주로 정책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대분류 1,2는 가족관련 지표로서 통계청이 생산, 가공할 필요가 있는 지표이다. 대분류 1 ‘가족의 구조’에서 53개 지표 중 34개, 대분류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에서 59개 지표 중 43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6〉 OECD Family Database와 한국 가족·가구 자료현황

대영역 (표와 도표 수)	누락자료				제공료			
	한국자료 보완		자료 보완 불가 능	계	한국자료 업데이트		자료 업데 이트 불가 능	계
	OEC D 기준 부합	OECD 기준 부합 되지 않음			OECD 기준부 합	OECD 기준 부합 않음		
가족의 구조(53)	8	15	11	34	14	-	5	19

대영역 (표와 도표 수)	누락자료				제공료			
	한국자료 보완		자료 보완 불가 능	계	한국자료 업데이트		자료 업데 이트 불가 능	계
	OEC D 기준 부합	OECD 기준 부합 되지 않음			OECD 기준부 합	OECD 기준 부합 않음		
노동시장에 서의 가족지위(59)	5	25	13	43	2	-	14	16
가족 및 아동 정책(51)	4	14	2	20	7	3	21	31
아동 성과(71)	3	7	27	37	16	2	16	34
합계(163)	17	54	26		23	3	40	
	71		26		26		40	
제공 가능한 한국 자료	137 (OECD 기준에 부합 80개,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 57개)							
제공 불가능한 한국자료	26							

자료: 신윤정외(2012: 17)

## 제2절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작성통계의 비교분석

### 1. 가족·가구 프레임워크와 가족 통계조사

가족 통계는 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통계들을 자료화하고 일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가족관련 필요통계와 지표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은 이러한 필요통계와 지표의 생산과 집적, 분류의 과정에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된다. II장에서 구성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을 가지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생산되는 가족관련 지표와 통계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III-7>에서 확인하듯이, 가족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기본모듈로 하여 가족의 구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조사되고 분류, 공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등록센서스의 전환과 더불어 30%의 표본대상의 실태조사에서 가족관련 질문문항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다 다양해진 파트너십 상황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출산상황에 대한 정보 역시 다양한 모의 출산연령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으며, 추가 조사 및 집계항목도 적지 않다. 특히 결혼의 형성과 해체의 부분에 대한 것은 혼인력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통계에 대한 학계 및 정책현장에서의 요구도는 적지 않으나 국민적 정서와 조사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관계의 변화는 성인남녀의 가족생활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이혼, 재혼에 의한 부모자녀관계의 성격과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아동과 아동의 돌봄과 부양과 연관된 항목에 대한 관심이다. 초저출산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아동의 발달과 복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출생통계로부터 이들이 어떠한 가족상황에 놓여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유자녀부부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가족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자료생산이 누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III-7>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과 작성통계 현황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가	파트	법률혼	혼인신고	통계청의	2015부터	- 사실혼 수,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족구조	너집		여부 남녀모두의 국적 출신국적	인구센서스	포함	비율 -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가구 수, 비율 -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동거/혼인부모 수, 비율 -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미혼한부모가족 수, 비율
		동거여부	3개월 이상	통계청 인구센서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동거기간 문항에 포함	
		혼인력	초혼/재혼 여부	상동	(장기적으로 문항추가)	
		이혼·별거	이혼·별거 여부 이혼·별거 사유	상동	(장기적으로 문항추가)	
	세대구성	세대 수	가구 내 세대 수	상동	-	
		미성년자녀	연령별 이동수 미성년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상동	미성년 아동 중심으로 변수 추가, 미성년아동의 부모를 알수 있도록 문항 추가	
	가구규모	가구크기	가구원 수	상동		
가족기능	경제적 부양	부양자	가구내 소득자수(홀벌이·맞벌이) 가구주와 가구소득자와의 관계 아동부·아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구원 정보 추가, 또는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 맞벌이 가구 수 비율, 고용형태 -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취업형태(맞벌이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모의 경제활동 상황		연간 집계 필요	가구 여부, 고용형태) - 막내자녀 연령별 부모의 취업형태(맞벌이 가구 여부, 고용형태) -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의 취업형태
		생활수준	주거상황	통계청 인구센서스	-	- 미성년아동 가구의 주거상태
		원가족부양	부모부양비용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통계청의 가계조사	적절한 표본설계와 충분한 표본수 확보	
재생산		출산력	16세 이상 여성이 자녀출산경험유무, 출산자녀수와 성별, 출산터울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5년 표본조사부터 누락없이 가능	
		추가 출산계획	추가 출산계획	상동	상동	
돌봄		미취학아동 돌봄(만0~5세) 여부	연령별 주돌봄자와 돌봄기관 주돌봄자와	상동	2015년 표본조사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이동과의 관계			
		학령기아동 돌봄(만6~15 세) 여부	연령별 돌봄기관과 돌봄시간	상동	상동	
		노부모 돌봄 여부	노부모의 신체상태와 수발자, 주수발자와 노인의 관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 사	-가족유형구 분 표준화	
		그외 돌봄(부모의 장애/질병 가족원) 여부	가족내 장애 및 질병가족원 유무와 주수발자, 장애 및 질병가족원 과 주수발자 관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 사	- 충분한 사례수 확보	
		가사노동 수행	가사노동의 영역별 주수행자	생활시간조사	2014년부터 가구원정보 상세히 포함	- 미취학자녀 수별, 막내자 녀연령별 돌 봄시간 - 여성의 주 행동·동시행 동 돌봄시간 - 여성의 아 동돌봄·성인 돌봄시간
	정서 적 지지	유대감(결속)	부부 및 부모자녀, 원가족간의	통계청의 사회조사, 여성가족부	<b>사회조사는 가구정보와 의 결합을</b>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의사소통 및 신뢰	의 가족실태조사	통한 재분류	
		관계의 질	부부 및 부모자녀, 원가족관계의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상동	
		가정폭력	폭력경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족관계에서의 폭력경험
가족가치	파트너십	결혼 필요성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상동	상동	
		동거 허용성	동거허용에 대한 태도	상동	상동	
		재혼 허용성	재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상동	상동	
		이혼 허용성	이혼 허용에 대한 태도	상동	상동	
	재생산	자녀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과 그 이유	상동	상동	
		희망 자녀수	희망하는 자녀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상동	
		성선헌호	희망하는 자녀성별	상동	상동	
	돌봄/부양주체	영아돌봄책임	자녀돌봄주책임자에 대한 견해	통계청 사회조사	자녀연령별 구분 조사	
		유아돌봄책임	상동	상동	상동	
		노부모 부양	노부모	상동		

영역	중영역	주요 준거	측정변수 /추가 필요변수	주요 출처 및 책임기관	수정 및 보완	추가 집계 항목	
성 역할 및 가족 주의	책임	책임	주부양자에 대한 견해				
		기타 돌봄책임	장애, 질병자에 대한 주돌봄자		-사회조사 신규항목		
	가사분담 및 가족 주의	가사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가사분담방 식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상동			
		맞벌이	맞벌이에 대한 태도	신규			
		여성성/남성 성	여성적, 남성적 기질에 대한 동의	신규측정		-가족실태조 사 혹은 여성가족실 태조사 포함	
		직계가족 이념	가족중심성, 부계혈통주 의에 대한 태도	(표본조사)성 균관대 KGSS 로 추정			

## 2. OECD 가족 통계

OECD 가입국가로서 우리의 가족관련 정보는 OECD의 Family Database에서 집계, 분류되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국가 중심의 가족분류가 우리의 정서와 가족개념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가족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쟁점, 사회정책의 개입지점과 개입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가구프레임워크와는 별개로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보제공의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관련통계의 집계 및 분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족구조’ 영역과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 영역별 세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와 연관된 정보제공의 기관 및 주요 출처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의 자료제공 현황 및 개선사항 제언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 외(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1. The structure of families (SF)	Families and Children	SF1.1 Family size and composition	- 가구규모 - 가구유형	「인구총조사」	
		SF1.2 Children in families	- 아동이 있는 가구수, 비율	「인구총조사」로 재계산 (추후 자녀연령 고려 필요)	「인구총조사」 집계시 자녀연령 중심으로 집계치 제공 필요
		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 아동의 부모 동거여부 (모두 동거, 부동거, 모 동거, 모두 비동거)	(추후 「인구총조사」 원자료로 추계 필요)	「인구총조사」 2015 조사부터 추계 가능, 자녀연령 중심으로 집계치 제공 필요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 외(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 아동 및 청소년 수, 비율, 추이	「장래인구추계」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인구통계에 해당
		SF1.5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 아동가구의 방 숫자 - 아동가구의 주거상태	※ 2015년 신규 지표	「인구총조사」 추계 가능, 자녀연령 중심으로 집계치 제공 필요
		SF2.1 Fertility rates	- 합계출산율, 완결출산율, 출생순위별 비율	「장래인구추계」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인구통계에 해당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 이상자녀수, 실제자녀수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 건·복지 실태 조사」,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로 통합·변경
	Fertility indicators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 첫 자녀출산시 모연령 - 연령별출산율	「출생통계」 「주민등록인 구」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인구통계에 해당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 혼외출산비율 - 청소년출산율	「출생통계」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인구통계에 해당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의(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teenage births			
		SF2.5 Childlessnes	- 코호트별 무자녀여성비율 - 확정적 무자녀 비율	「인구총조사」 표본조사로 부분 추계 가능	「인구총조사」 2015조사부터 미혼모 출산 모두 포괄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	- 조혼인율 - 초혼비율 - 조이혼율 - 혼인~이혼기간	「혼인통계」 「이혼통계」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 자녀가 있는 이혼·별거가족 비율	「이혼통계」 (자녀연령 18세로 조정 필요)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SF3.3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 동거비율	(「한국종합사회조사」로 부분 추정)	「인구총조사」 2015 조사부터 추계 가능
		SF3.4 Family violence	- 파트너로부터 폭력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가정폭력실태조사」	정기적 법정조사인 「가정폭력실태조사」 활용이 적절
2.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LMF1.1 Children in families by employment status	- 아동부모의 취업여부(모두 취업, 취업+비취업, 모두 비취업) - 아동부모의 취	(「한국노동패널」로 불완전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가문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문항 필요, ※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가 연간 생산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의(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업형태(모두 전일, 전일+반일, 전일+비취업, 기타, 모두 비취업) - 한부모의 고용 형태	필요)	될 경우, 취업·고용여부는 연간추정 가능
	LMF1.2 Maternal employment	- 아동연령별 모성고용율		(「한국노동패널」로 불완전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가문항 필요)	상동
	LMF1.3 Maternal employment by family status	- 혼인상태별 모성고용율		(「한국노동패널」로 불완전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가문항 필요)	상동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 생애주기별 고용율		「경제활동인구조사」(OECD Labor Statistics 제출된 통계)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고용통계에 해당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 종일제근로자 성별임금격차 - 교육수준별 종일제근로자 별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고용통계에 해당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의(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educational attainment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고용율 격차</li> <li>- 성별 전일제고용율 격차</li> <li>- 교육수준별, 성별 고용율 격차</li> <li>- 교육수준별 성별 전일제 고용율 격차</li> <li>- 성별 직종집중도</li> <li>- 성별 임시고용율</li> </ul>	(OECD employment database 제출된 통계)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고용통계에 해당
			- 성별 관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상동
		LMF2.1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 성별 주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Labor Statistics 제출된 통계)	상동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LMF2.2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녀부부의 취업형태</li> <li>- 막내자녀연령별 유자녀부부의</li> </ul>	(「한국노동패널」로 불완전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문항 필요, 「인구총조사」가 연간 생산될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 외(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among couple families and adults in couple families individually ,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취업형태 - 성별 유자녀부부의 주 근로시간 - 막내자녀연령별 · 성별 유자녀부부의 취업형태 - 자녀수별 · 성별 유자녀부부의 취업형태		경우 취업 · 고용여부는 연간추정 가능
		LMF2.3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single persons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 한부모의 취업형태 - 취업 한부모의 주 근로시간	(샘플수 부족으로 추정 불가)	상동
		LMF2.4 Family-frie ndly	선택적 ·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가능한 기업	(「사업체 패널」, 「한국노동패	



주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내용	신윤정 외(2012) 의견	본 연구 검토 의견
		workplace practices	비율 재택근무하는 근로자 비율	「생활시간조사」 등으로 추정)	
		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성별·미취학자 녀수별 돌봄 시간 - 여성의 막내자녀 연령별 돌봄 시간 - 여성의 주행동·동시행 동 돌봄시간 - 여성의 아동돌봄·성인 돌봄 시간	「생활시간조사」로 부분추정 (가구원 정보 추가 필요)	「생활시간조사」 2014 조사부터 전체 추계 가능
		LMF2.6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 성별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	「생활시간조사」	
		LMF2.7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 삶의질 만족도 - 아동의 삶의질 만족도 - 성별 삶의질 만족도 - 고용상태별 삶의질 만족도 - 일가족양립만족 도	(「한국노동 패널」, 「세계 가치관조사 」,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등으로 추정) (일가족양립 만족도 없음)	※가족·가구 통계보다는 웰빙 일반에 대한 통계에 해당

자료: 신윤정 외(2012) 를 참조하여 OECD Family Database 재정리

## 제4장

# 가족가구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 제1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 주요 조사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가.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집단으로서 불완전성: 조사시기의 문제 및 가구원간 관계정보 부재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집계되어 제공되었기 때문에, 집계 기간과 동떨어진 조사들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기에 모집단이 지나치게 노후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예컨대 201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하는 ‘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정보는 지나치게 노후하여 현재 거주지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아직 집계치가 제공되기 이전이어서 조사모집단을 구성하고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가족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5년이어서 매 조사시점마다 이와 같이 5년 전의 자료를 표본틀로 사용하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조사에서는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 거주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이를 가중치 사용을 통해 보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표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아파트가 아닌 가구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매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조사시점의 불일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가구주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가구원들간의 정보를 추적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집계하는 ‘한부모가구’의 분류는 정책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 상이하어,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10년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만 제공되고 있어, 아동이 가구주의 자녀가 아닌 경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정확한 집계기 아닌 추정과정을 거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총조사가 전환되면서 기존의 인구총조사 이상의 가구원간의 관계가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국의 센서스자료의 경우 모든 가구원들간의 관계를 직접 조사하고 있는데, 최소한 18세 이하 미성년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도록 원자료가 가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책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들에서처럼 집계항목 목표에서도 기존의 ‘세대’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가구주’ 개념과 ‘가구원’ 범위의 혼선

가구단위 조사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가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토대로 가구의 구성 및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 가구주의 개념은 대체로 통계청의 정의를 따라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가구대표’를 인구센서스의 가구주 개념과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

나, 2015년부터는 ‘가구원을 돌보는 사람’으로 정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2세대 이상의 가구조사에서는 정확한 대상자 판별의 문제로 가구대표자는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가구대표자를 선정하고 있어, 통계청의 가구주 정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 지침서]

- "생활전반에 대하여 돌보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을 주로 보살피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사항(예를 들어 영유아자녀의 어린이집 등)을 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
- 노부모+부부 또는 노부모+부부+ 미혼자녀인 가구의 경우: 2세대의 부부 중 한 명을 ‘가구대표자’로 선정
- 조부모(외조모 포함)+미혼 손자녀 가구: 조부모 중 한 명을 가구대표로 선정. 다만 미혼 손자녀가 생계를 책임질 경우 이를 가구대표로 선정
- 노부모 +미혼 자녀 가구: 아들 또는 딸이 생계를 책임질 경우 이를 가구대표로 선정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가구주의 정의와 동일하지만, “사전에 이런 엄격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지목하는 가구원(응답자 본인 포함)을 가구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가구주 정의를 가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열어둔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과 같은 정의는 응답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 ‘성별이나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없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일반 응답자들은 과거 호주의 개념을 토대로 가구주를 규정하고 연장자 중심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생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한 명을 가구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남편을 가구주로 응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구주’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럽국가들의 인구센서스에서는 가구의 대표를 주

택의 소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가구대표는 자동으로 ‘세대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센서스 뿐 아니라 가구·가족과 관련된 주요 조사들에서 가구대표의 정의를 보다 명확한 의미가 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가구원을 설정할 때 많은 경우 ‘동거하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데, 동거 여부는 가구의 규모 및 형태, 가구원용 설문지 응답자 선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주중에는 조부모의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부모의 집에서 지내는 아동,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함께 사는 주말부부 등 거주지의 개념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거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주일에 며칠 이상 함께 사는 경우 등<sup>10)</sup> 보다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구단위로 가족생활을 파악하고 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예를 들어 혼인해서 따로 사는 딸은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혼인해서 함께 사는 딸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등 가족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가구 개념에서 가족을 구분하면 이러한 고민이 필요없음과 동시에 나름의 명확한 범주 설정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가구조사의 경우 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족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시적 비동거, 주말부부 등의 문제와 1인가구의 통계가 명확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 1인가구와 직업 혹은 학업 등을 이유로 1인가구가 된 경우의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한부모가구가 된 경우 이를 가족형태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sup>11)</sup>.

#### 다. 표준화된 가족가구 통계 배경변수의 부재

10) 이는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2015년 5월 21일) 패널토의에서 이재립 교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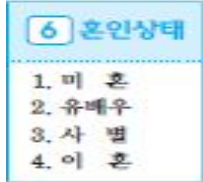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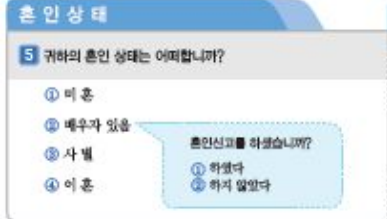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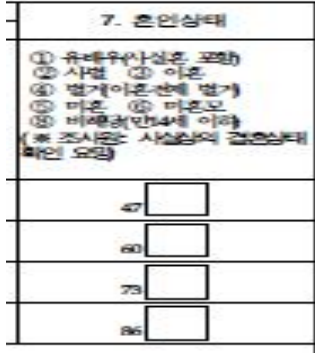
11) 본과제를 자문해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책임자인 주재선 연구위원의 지적사항이다.

가족·가구영역 조사들의 경우, 조사마다 표준화된 배경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가족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가족가치 통계인 ‘사회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이 간명한 장점이 있지만 배경변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돌봄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가족유형이 생활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맞벌이’, ‘양부모/한부모’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취학아동 유무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세 미만의 가구원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구구성 전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 등 일부 통계청 집계변수에 오류가 발생했던 바가 있었다(김은지 외, 2010). 2014년부터는 가구원 전체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상당부분 가구원 정보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컨대 ‘맞벌이’ 변수도 9가지로, ‘양부모/한부모’ 변수도 7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외 ‘돌봄가구’, ‘고령자가구’ 등의 변수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배경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변수는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배경변수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수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적 부양’ 영역과 관련한 조사자료에서 가구관련 정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관련 통계에서 OECD Family Database의 네 영역 중 하나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한 정보 전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와 같은 모성고용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맞벌이’가구 비율 등을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표준화된 가족 통계 조사모듈이 개발·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본적인 가족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문항조차 가족관련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써 자료생산 및 결과분석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가족구조 파악의 하나인 파트너십을 질문하는 것조차 11종이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표 IV-1> 가족 통계에서 파트너십 조사문항의 불일치한 사례

파트너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 사회조사(2014)
		
	<p>-인구주택총조사(2015)</p> <p><b>24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b></p> <p>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p> <p><b>24-1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b></p> <p>• 재혼의 경우에는 초혼 시기를 기입합니다.</p> <p>① 양력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② 음력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p> <p>혼인상태의 경우 법률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었었음. 재혼인 경우에도 초혼 시기를 응답하도록 구성됨</p>	
<p>-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2)</p>  <p>가구구성원 관련 문항에서 각 구성원의 혼인상태를 묻고 있음. 그 이후의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음.</p>		

질문내용	부인 (가구원번호:___)	남편 (가구원번호:___)
1. 부인/남편께서는 언제 혼인하셨습니다(현재 혼인) 혼인당시 연월일 ____년 ____월 (양, 음)	혼인연령: 만__세	혼인연령: 만__세
2. 현재의 혼인이 두분 모두에게 초혼입니까? ① 초혼(질문 3으로) ② 재혼 이상 ③ 무응답(질문 3으로)	-----	-----
2-1. (재혼 이상인 경우) 그러면 초혼은 언제 하셨습니다? (비해당: 9998 / 98, 무응답: 9999 / 99)	양력 ____년 ____월 만 ____세	양력 ____년 ____월 만 ____세

질문내용	부인	남편
4. (이혼/별거/사별) 당시 부인/남편 께서는 각각 몇 세이셨으며, 해 혼 년월은 언제이었습니까? (무응답; 년:9999, 월/세:99)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양) 해혼시 연령: 만 ____세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양) 해혼시 연령: 만 ____세
	해혼 당시 연월: ____년 ____월 (양)	

-한부모실태조사

문47) 귀하가 전 배우자와 **같이 살기 시작한 시기**와 **한부모가 된 시기**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응답란
① 결혼/동거 시작시기	28-29      30-31 ____년 ____월 9998. 같이 산적없음
② 한부모가 된 시기	32-35      36-37 ____년 ____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2)





■ 문1. \_\_님은 결혼한 적이 있으십니까? P404ML01

◆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실혼인 경우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지난 조사 이후의 결혼경험 여부가 아니라 전 생애의 결혼경험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D. 결혼과 부부생활로 가십시오.

② 없다 → C. 미혼 여성으로 가십시오.

※ 다음은 결혼경험이 있으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문1. 지난 조사 시 \_\_님의 혼인상태가 \_\_였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INFO\_SHEET 참조) 지난 조사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P407ML06

◆ 별거를 하게 되시거나 별거 후 재결합을 하신 경우도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었다 → 문1-1로 가십시오.
- ② 없었다 → 문2로 가십시오.

□ 문1-1.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변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P407ML06 1-2

◆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자녀교육(기러기 아빠),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경우는 별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지난 조사 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 배우자가 지난 조사 이후 사별한 것은 사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변화 내용 P407ML06 1-2	변화 시기
1	① 초혼                      ② 재혼 ③ 별거 후 재결합        ④ 이혼 후 재결합 ⑤ 별거                      ⑥ 이혼                      ⑦ 사별	P407ML09 1-2 년 P407ML10 1-2 월
2	② 재혼                      ③ 별거 후 재결합 ④ 이혼 후 재결합        ⑤ 별거 ⑥ 이혼                      ⑦ 사별	_____ 년 _____ 월
.	② 재혼                      ③ 별거 후 재결합 ④ 이혼 후 재결합        ⑤ 별거 ⑥ 이혼                      ⑦ 사별	_____ 년 _____ 월

-가정폭력실태조사(2013)

**30**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p>1 미혼이다 → <b>31</b> 항목으로</p> <p>2 동거하고 있다(사실혼 관계)</p> <p>3 결혼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p> <p>4 결혼했으나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따로 살고 있다</p> <p>5 별거중이다</p> <p>6 이혼했다</p> <p>7 사별했다</p>	<p><b>30-1</b>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예: 1980년)</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gray;"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gray;"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gray;"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gray;" type="text"/>             년           </p>
--	--

**12** 귀하에게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까?

<p>1 예 → <b>13</b> 항목으로</p> <p>2 아니요</p>
--

라. 가족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의 부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변화는 가족 삶의 방식과 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생애주기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거나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상황적 적응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발달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형화된 가족관계의 틀이나 형식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바로 결혼 및 가족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혼인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가족의 변천과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원의 출생과 사망, 결혼 또는 동거, 자녀의 독립, 부부의 이별과 같은 가족사건이다. 이처럼 가족의 상태와 형식의 변화가 개인생애의 변화에 의한 것이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러한 변동은 통상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의 회수와 유형에 의해 집계된다. 따라

서 가족의 기본 형태와 크기, 구성원리가 유형화된 가족구조의 측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의 회수와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가족 통계에서 가족 형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혼연령과 제도적인 형태여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 다양한 결혼의 방식과 재혼과 같은 결혼횟수에 대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녀출산 여부는 확인하지만, 자녀출산시 모의 연령을 비롯한 출산에 관한 자료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산된다. 요행히 최근 변경된 인구센서스에서 결혼의 방식과 출산자녀 질문에서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가족해체에 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부의 이별과 이혼, 자녀들의 독립, 사망에 관한 자료들은 충분치 않다.

#### 마. 가족형태의 복잡성과 데이터 크리닝과 자료화의 문제<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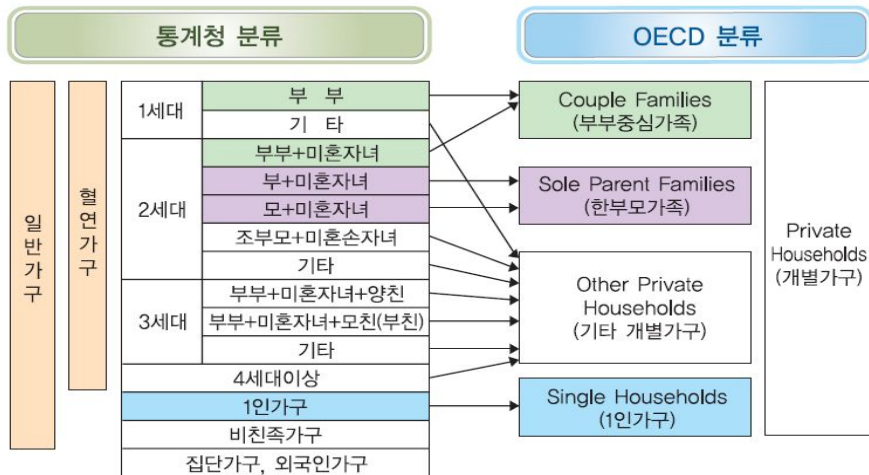
측정하려는 문항의 수가 많고 그 내용이 결코 단순치 않은 이른바 실태조사나 종합적 성격의 조사일수록 실사 이후에 정교한 데이터 클리닝 노력, 특히 논리적 부정합성이나 범주 체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량적(시간, 인원)·정성적(commitment) 노력은 의외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조사 항목들 가운데서도 데이터 클리닝이 가장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의 유형 및 형태구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동거단위라는 가구의 범주로 한정하여 가족관계를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가족관계의 복잡성은 결코 제한된 측정정보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족의 형태와 유형화가 간단치는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응답이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가구유형이나 가족관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해석에 앞서 다양한 사례나 경험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누적되어야 한다.

12) 이러한 사항은 2015년 5.23일 한국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패널에서 성균관대 김상욱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윤석교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 2. 한국 OECD Family Database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OECD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OECD에서 4대 분류항목으로 설정한 ‘부부중심 가족(Couple Families)’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 및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국 통계 분류상 정확한 명칭이 없고 다만 핵가족과 부부가족이 합해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 ‘한부모가족(Sole Parent Families)’으로 분류되는 가족형태는 한국에서는 2세대 가구 소분류의 형태 중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을 의미한다.

〈그림 IV-1〉 통계청과 OECD의 가족형태 분류체계 비교



출처: 김은지, 최인희, 김혜영(2012):10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에서는 ‘혈연가구’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분석에서 자주 제외되는 ‘1인가구(Single Households)’를 OECD에서는 주요 분류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족 통계는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을 중요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3세대 이상 가구 중에서도 ‘부부+미혼자녀+

양친(또는 모친, 부친)으로 구성된 이념형적 직계가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작아 이들을 비정형가구와 묶어 ‘기타 개별가구(Other Private Households)’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의 고유한 가족문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위를 따지기 보다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자료의 산출과 함께 우리사회만의 고유한 가족문화와 현실을 포착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 분류체계 외에도, 미성년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부재는 국제통계와 한국의 통계를 비교하기에 어려운 점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대분류 1 ‘가족의 구조’ 및 대분류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항목에서 누락된 항목들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IV-3>에 제시된 것처럼 대분류 1 ‘가족의 구조’에서는 미성년 아동의 연령(6세, 14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 미성년 아동이 속한 가족의 특성 관련 지표(한부모여부, 자녀구, 가구유형), 미성년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 등의 항목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분류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항목에서는 다른 여성고용과 가족변수, 생활시간과 가족변수를 연결하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등 모성고용(maternal employment) 관련 정보의 부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녀돌봄의 문제나 일가정양립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IV-3>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방안

지표	정책제언	주무기관
SF1.1, SF1.4	201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OECD
SF1.2, SF1.3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청 자료가 요청됨 -한부모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전체가구에서 couple household, single-person household, sole-parent household, complex household 비중	- 통계청

지표	정책제언	주무기관
	-전체 가구 중 유자녀 가구 비중, 전체 couple household 중 유자녀 가구 비중, 전체 유자녀 가구 중 유자녀 한부모 가구 비중 -특정 코호트 여성의 특정 연령에서의 무자녀 비율 -전체 인구의 초혼 연령 (남성과 여성을 합한 인구) -전체 가구 중 자녀 없는 가구 비중, 자녀 1명, 2명, 3명 이상 -가구의 비중, 전체 가구 중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비중 -가구 유형을 아동을 중심으로 비율을 구하는 지표들 -전체 0~14세 아동 중 한부모/양부모/기타 성인과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 -전체 0~14세 아동 중 자녀가 1명, 2명, 3명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비중 -가구 유형을 여성을 중심으로 비율을 구하는 지표들 -25~29세/30~34세/35~39세.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중	
SF2.1, SF2.3, SF2.4	자녀출생에 대한 과거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1950년대 코호트에 대한 자료 및 1970~1980년대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연령별 출산 현황 자료를 5세별이 아닌 각세별로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SF2.2	이상 자녀수에 대한 지표 정의 및 샘플 특성을 OECD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
SF2.5	혼인 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여성의 출생 자녀수를 조사해야 할 것임	-통계청
SF3.2	부모의 이혼을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부양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이 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부양 자녀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한부모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
SF3.3	인구총조사에서 혼인상태에 대한 항목을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하여 사실혼 관계에서의 가족 구조에 대한 현황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여성가족부

지표	정책제언	주무기관
	(2015년 현재 표본조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항목이 변경, 추가 되었음.) “사실혼” 관계의 특징과 가족생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	
SF3.4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임 기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현황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
LMF1.1 LMF1.2 LMF1.3 LMF2.2	가족 구조 및 가족 특성에 따른 취업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혼인상태, 자녀수, 자녀 연령, 자녀 출생 순위 등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매월 수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연간 최소 1회 가구 조사를 포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LMF1.2	25~29세 여성의 취업률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임	-통계청
LMF1.6	한국표준직업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4단위까지의 세부적인 직업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통계청
LMF2.4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는 유럽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개발 국가의 노동환경에 부합되지 않음 사업체패널조사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과 기업의 보육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경제활동조사에서 가족친화제도 현황 및 근로자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OECD -고용노동부
LMF2.5, LMF2.6	생활시간조사는 자녀수, 자녀 연령, 자녀출생 순위 등 자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임 각 행동을 했을 때 자녀가 옆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LMF2.8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자료: 신윤정외(2012:171-172 일부 발췌 및 수정보완)



## 제2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 1. 단기과제의 실행계획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이로 인한 가족정책 영역의 확장은 정책추진의 배경으로서 혹은 주요한 정책의 표적집단으로서 특정 유형의 가족과 그러한 가족의 어린자녀 및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장애, 노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체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조사를 설계하고 있어 조사의 주기는 물론 규모와 문항의 중첩과 내용적 차이가 동시에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지 않은 조사와 조사결과에 준한 가족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는 가족 통계 생산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가족 통계 생산 기관과의 업무협의체 구성

우선적으로 가족영역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 및 조사결과의 집계 및 분류와 가공에 관한 한 공공적인 책임과 노하우가 집적된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통계업무를 주관하는 곳에서 가족관련 조사 가운데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각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그러한 결과에 준해 관련 조사들을 계층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층화의 주요 기준은 조사의 규모와 특성, 주기로 설정한다. 따라서 인구센서스나 사회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는 가족의 형태와 구성, 변화 추이와 같은 준거적 자료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중앙부처는 가족의 구조와 형태변화에 대한 통계청의 기본 자료를 근간으로 정책수요 및 추진을 위한 표적화된 가구 및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각 조사의 특징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징화하여 각개의 가족조사 및 가족 통계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한된 규모와 문항수로 기획되는 가족조사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질문만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신뢰할만하고 안정적으로 자료생산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족관련 조사의 지침이 되거나 새로운 변화추이를 포착할 수 있는 대규모 조사로서 인구센서스나 사회조사는 결과분석에서 제기된 미분류 형태나 기성의 가족유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족관계나 부양 및 돌봄관계망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삶의 변화 양상에 대한 민감성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 나. 표준화된 가족 통계 생산 매뉴얼의 구성 및 공유

가족영역의 통계생산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통계생산의 기본 매뉴얼의 사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족 통계생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각 자료생산과정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은 가족 통계생산과정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각 조사의 목적을 보다 특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련 조사 11종은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경우조차 조금씩 문항구성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거나 표준화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가구정보에 기초하여 가족 유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비교적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가구원간의 관계를 통해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유된 질문문항과 조사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가족 통계생산에 있어 조사의 주체와 실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준화되지 못한 측정(unstandardized measurement)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구주와 가구원간의 관계에 기초한 가족구조분석을 위해 다양한 질문문항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비교적 단순한 질문문항(A형)과 정교한 질문문항(B형)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가족의 유형과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조사의 취지와 전체 조사규모에 맞춰 취사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가족조사 및 통계 전문인력 교류와 의사결정과정의 컨트롤 타워

가족관련 통계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정부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주축이 되어 생산, 분석하고 있어 비교적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관리 및 승인의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과 가족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간의 긴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정책국이 조직화되어 있는 여성가족부는 가족관련 다종 다양한 전국실태조사를 주도하지만, 여성가족부내에 통계를 잘 아는 전문가 혹은 실무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정부조직운영상 경험한 담당공무원 역시 1-2년 내외로 교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관련 실태조사가 정례화되어 비교적 빈번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에는 통계청의 통계전문가나 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의 형식으로 관련 통계 생산과정의 조직화에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족관련 실태조사의 경우 주기가 3년~5년인 만큼 공무원의 특성 상 조시시점 전후하여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인력관리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또한 전문인력이 긴밀하게 관여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처의 주무과장이나 부처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의 특성변화가 빈번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경우 기본문항의 설계와 변경으로부터 특정시기마다의 부가적 문항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가족관련 조사들의 체계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조사문항의 승인과 공표과정에서 관리된 누적적 기록들을 모아 사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처로 송부하고 차년도 조사과정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가족·가구 통계 개선계획 수립

전국단위의 가족관련 조사통계와 행정보고 자료가 구축되고는 있으나, 각 조사결과에 의한 가족관련 자료구축 및 OECD 가족자료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조사 및 통계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집계나 분류의 문

제로부터 신규문항 검토에 이르기까지 가족 통계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중단기과제로 구분하는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2. 중장기과제의 실행계획(우선순위 포함)

### 가.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의 적용과 이의 개선과제 로드맵 작성

그동안 가족 통계에서 주요하게 요구된 사항들 가운데 혼인 및 자녀 출산에 관한 문항들은 2015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가구단위의 조사에서 개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전국 집계에는 필요하나 쉽게 조사문항을 설계할 수 없었던 문항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개인 및 가족생애주기의 탈표준화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 및 가족의 혼인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혼관계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정보는 점차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보제공 및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15년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과정 및 그 결과 분석과정을 사후적으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준해 비교 분석하고 인구센서스를 통한 가족구조 및 가구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 인구센서스를 기준통계로 하여 여타의 가족관련조사들의 위치조정 및 인구센서스를 통한 정확한 가구 및 가족정보 제공의 수립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가족·가구 통계 조사의 증화와 특성화의 기획·조정

가족관련 조사통계가 현재 전국단위에서 11종 생산되고 있으나, 가족 현실을 포착하기 위한 위, 아래로부터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물론 현재에도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조사통계의 특성이 발견되지만, 각기 조사의 목적에 따른 내용의 조정과 조정후 세부 내용의 전문화 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각 조사통계마다 조사통계가 포괄하고 있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포괄하는 부분에 관한 문항들은 보다 간편하게 혹은 중분류이상의 범주로 측정하고 본조사의 특성화문항에는 세분류 수준에서 측정하는 등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문항수의 조정과 중복을 피하면서도 상호 조사결과의 공유와 연계를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가족·가구 통계의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피드백

가족·가구 통계에 대한 체계화의 밑그림으로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그 활용여부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의 영역으로 규정된 11종 통계 외에도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전국단위의 국가승인통계들을 대상으로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에 준해 자료생산의 방식과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들 통계들이 각각의 주기와 고유한 목적이외에도 사회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가구 및 가족구성과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생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및 결과가 통계승인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충분한 실효성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 1. 현 국가주요지표의 가족·가구 통계 체계

통계청에서는 2014년부터 기존의 ‘e-나라지표’ 체계를 개선한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이는 기존 제공통계들을 부처 예산체계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721종에 이르던 제공 통계 중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sup>13)</sup> 2014년부터 제공

13) 통계청 보도자료 「국가주요지표 체계」 서비스, 검색일 2014. 4. 21.

된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가족·가구 통계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인구통계 영역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 IV-3>과 같다. ‘가구와 가족’ 영역과 ‘인구’ 영역 아래에 하위영역이 있고, 각 하위영역마다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국제비교지표는 대부분 주요지표와 동일하다.

<표 IV-3>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중 가족·가구 통계 및 인구영역

영역	하위영역	지표통계명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 평균가구원수		• 평균가구원수
		• 한부모가구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조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조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이용률
		•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 인구	• 총인구 • 도시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조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인구비

국가주요지표의 ‘가구와 가족’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가구구성’ 영역, ‘가족형성’ 영역, ‘가족관계’ 영역, ‘가족돌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가구구성’ 영역에서는 ‘평균가구원수’와 ‘한부모가구비율’을 주

요 지표로 선정하고 있고, 이들은 국제비교지표이기도 하다. 보조지표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형성’ 영역에서는 주요지표로 ‘혼인율’과 ‘이혼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비교지표이기도 하다. 혼인과 관련된 보조지표로는 ‘평균초혼연령’, ‘결혼선호율’, ‘국제결혼비율’이 있으며, 이혼과 관련된 보조지표로는 ‘평균이혼연령’, ‘이혼반대율’이 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주요지표로 ‘가족관계만족도’와 ‘가사노동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가사노동시간’은 국제비교지표이기도 하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세부지표로 ‘배우자만족도’, ‘자녀만족도’가 제시되고 있으며, 가족시간과 관련된 세부지표로는 ‘가족시간’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어린이집이용률’과 ‘노인과 자녀동거비율’이 주요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이용률’은 국제비교지표로도 활용된다. 보조지표로는 ‘육아휴직자수’, ‘부모부양의무수용률’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인구’ 영역에서는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의 세가지 하위 영역이 제시되고 있으며, 가족·가구 통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출산율 지표 정도이다. 출산율 관련 지표 중에서 ‘합계출산율’ 지표는 주요 지표이면서 국제비교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구구성’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들과 ‘가족형성’의 주요 지표들은 본 연구의 ‘가족구조’ 영역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단 ‘가족형성’ 지표 중 일부는 가치관의 영역으로서 ‘가족가치관 및 의식’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인구변화’ 영역의 통계들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 가족돌봄 기능, 출산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기능’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역분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국가주요지표의 가족·가구 통계 지표들은 본 연구의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서 포괄하는 영역과 내용이 현재의 국가주요지표에 모두 포괄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후에서 상술된다.

〈표 IV-4〉 국가주요지표 가족가구 통계와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영역	지표명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가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가구원수</li> <li>• 한부모가구비율</li> <li>•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li> </ul>	가족구조
가족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율</li> <li>• 평균초혼연령</li> <li>• 국제결혼비율</li> <li>• 이혼율</li> <li>• 평균이혼연령</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선호율</li> <li>• 이혼반대율</li> </ul>	가족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만족도</li> <li>• 배우자만족도</li> <li>• 자녀만족도</li> </ul>	가족기능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노동시간</li> <li>• 가족시간</li> </ul>	
인구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이용률</li> <li>• 육아휴직자수</li> </ul>	가족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li> <li>• 부모부양의무수용률</li> </ul>	
인구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출산율</li> </ul>	가족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출생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아수</li> </ul>	

## 2. 신규지표 제안

### 가. 영역별 신규지표 제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주요지표를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가구프레임에 부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가족의 불안정성의 심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구성과 해체 및 재구성이 전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구조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에는 단순히 혼인율, 이혼율, 국제결혼비율, 평균초혼 및 이혼연령이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설계변경 및 등록센서스자료를 활용하여 연령구간별 혼인율과 이혼율, 재혼율을 집계분석함으로써 가족변동의 추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인구센서스의 표본조사에서 문항이 추가 되어 신규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십으로서 동거비율을 적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위기 관리차원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가족·가구 통계 역시 아동을 기준으로 정보를 재구성, 재집계하여 공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동거율, 6세 미만, 6-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취업을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조와 돌봄기능과 연계하여 전체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 미성년자녀와 동거하는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족의 수와 비율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가족정책의 주요 추진영역은 바로 유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이며,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돌봄의 영역과 관련하여 맞벌이가구에 대한 통계 역시 국가의 주요 지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경우 유자녀가구의 부모맞벌이 여부가 중요하므로, 자녀를 취학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 상황에 대한 점검이 쉽게 가시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 2008년부터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 주요지표(정의, 측정방법, 지표의 의의, 해설, 상세통계표), 보조지

## 표 및 국제비교 지표

앞에서 상술한 신규지표가 과연 국가의 주요지표로 설정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내용은 향후 두차례 예정되어 있는 자문회의의 의견청취를 통해 확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연구진이 집필하고자 한다. 12월 5일 한국 가족학회에서 마련된 제 5차 자문회의를 통해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과 그에 따른 추가 자료생산 및 집계 내용들과 주요지표의 부분을 점검받은 후에 12월 8,9일에 걸친 추가 자문회의에서 연구진이 구성한 산식 및 보조 지표, 국제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권현익(2015). “분단 시대의 한국 친족연구” 「글로벌 한국학과 가족친족 연구」. 송현 이광규교수 추모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비교문화연구소.
- 김두현(1948).
- 김성철(2015). “송현 이광규의 한국 가족친족론” 「글로벌 한국학과 가족친족 연구」. 송현 이광규교수 추모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비교문화연구소.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한곤(2014).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959-972.
- 김혜영(2008).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 나은영·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문화 및 사회문제 3(1): 3-17.
- 도미향(2009)
- 박영신·김의철(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문제 12(1):161-195.
- 박종민·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조사: 한국인의 삶의 질 / 전체, 개별 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141-165.
- 옥선화·진미정·그레이스정·김지애(2014). “한국인 기혼남녀와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문화 비교: 가족의례와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2(1):75-85.
- 유계숙(2007)
- 이광규(1998). 「한국 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 이재열(2009). “사회의 질과 삶의 질: 사회발전의 지표와 측정”. 한국 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인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 이재열·한준·최문희·신인철·이희길·심수진(2014).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통계개발원.

- 이희길·심수진(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연구」. 통계개발원.
- 장경섭(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 생산 위기.” 한국 사회정책 18(3):63-90.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한국 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1-38.
- 장수찬(2002). “한국 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장수찬(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22(2):359-394.
- 전광희 (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 가족 정책의 전개 과정”. 사회과학연구 16:211-236.
- 조은(1993). 「한말 서울의 가족 구조.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한국 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9집)」. 문학과 지성사.
- 조은경·정혜정(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3(4):105-132.
- 조중열·조금숙(2004).
- 진미정(2011).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 취약성과 가능성”. (사)가정을건강하게 하는시민의모임 제2차 가족정책포럼 발표문.
- 진미정(2015). “한국 가족정책의 특수성과 과제: 미시공공성과 공동체성”. 최연실 외. 「한국 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 진미정(2015).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거주유형과 사회 적응”. 2015 한국 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통계청(2015). 2014 혼인·이혼통계.
- 최인희(2015)
- 한경혜·성미애·진미정(2006).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한국 가족문화원(200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함인희(2008)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7)

- Bian, Y., Davis, D., & Wang, S. (2007). Family Social Capital in Urban China: A Social Network Approach. In W. Tang & B. Holzner (Eds.)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herlin, A. (2010). *The Marriage-go-round: The state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America today*. New York: Vintage Book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1.
- Coontz, S. (2005). *Marriage: A history*. SJ Coontz Company. 김승욱 옮김. 진화하는 결혼. 작가정신.
- Edin, K. and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r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Gittins, D. (1985).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Palgrave Macmillan. 최연실 외 옮김(1997). 가족은 없다. 일산사.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Hareven, T. K. (1987). Historical Analysis of the Family.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 58.
- Herrmann, P. (2006). Social Quality: Opening Individual Well-Being for a Soci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2), 27-49.
- Jamieson, L. (2014). *Living alone: Globalization, identity and belonging*. Palgrave Macmillan Studies in Family and Intimate Life. Palgrave Macmillan.
- Katz, M. B. (1975). *The People of Hamilton, Canada West: Family and Class in Mid-Nineteenth-Century 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arce, D. (1990). Welfare is not for woman: Why the war on poverty cannot conqu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L. Gordon (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openoe, D. (1988).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Trewin, D., (2001), *Measuring Wellbeing: Frameworks for Australian Social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hite, J. M. & Klein, D.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Inc.

Murdock, G. P.(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Co.

Lévi Strauss, C.(1969), *The Elementary Structure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